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책임 심 선 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연구 지원 황 나 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발행인 정정옥

발행일 2023년 6월 30일

발행처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화 031)220-3900

홈페이지 www.gwff.kr

인쇄 디자인펌킨

I S B N 978-89-6432-625-1 93330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연구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해왔는데, 피해자 보호시설의 구조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도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는 지속되고 있으나 피해자 지원기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보호시설의 입소자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경기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시설의 운영현황, 입소자들의 특징, 보호시설의 주요 이슈 등을 검토하고, 피해자 보호시설이 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완되거나 개선되어야할 점을 제안해보고자 함.

나.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연구내용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근거와 주요 기능
 -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개선 방안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 실적 검토 등
 - 기관 현황 조사: 경기도 내 17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조사(서면조사)
 - 관계자 면접조사: 보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면접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 내용, 정책 과제 등에 대한 자문 의견 청취 및 반영

2.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현황과 특성 (2020-2021년)

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2020년과 2021년 말 기준, 경기도에는 5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 중이었고,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각각 45명, 29명이었음.

[표 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인원

(단위: 개소, 명)

연도	개소 수	입소정원	상근 종사자수	구분	연도 중 입소인원	연도 중 퇴소인원	12월 말 현원
2020년	5	65	30	전체	20	20	45
				장애인	5	5	25
2021년	5	-	30	전체	19	35	29
				장애인	9	17	16

주.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2023.2.)

- 2020년과 2021년 기준으로, 경기도 성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특성을 살펴보면, 입소자 연령대는 ‘13세~18세 이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19세~24세 이하’, ‘25세~64세 이하’ 순이었음. 입소 경로는 대부분 ‘성폭력 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복지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이었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연계된 경우가 많았는데, 입소자 가운데 다수가 ‘10~20대’였던 점을 고려해볼 수 있음. 지원 내용의 경우, ‘심리·정서 지원’이 40~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의료 지원’, ‘자립지원’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학교문제 지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입소자 가운데 10~20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입소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학교 관련 문제일 수 있음. 또한 장애인 입소자 비중이 높았음.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2022년 6월 기준, 전국에 65개가 운영 중이며, 일반 보호시설은 42개, 가족보호시설은 23개임. 경기도에는 11개의 시설이 운영 중으로 모두 일반보호시설임.

[표 2]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65	11	3	3	1	4	1	1	11	5	3	4	4	4	2	6	2
일반시설	42	8	2	2	1	2	0	1	11	4	1	1	2	2	2	3	0
가족보호시설	23	3	1	1	0	2	1	0	0	1	2	3	2	2	0	3	2

주. 2022년 6월 30일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2022). 2022년 상반기 가정폭력 피해자 자원시설 운영실적, p.5.

- 2020년과 2021년의 경기도 11개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은 총 154명이며, 종사자는 65명이었음. 2020년, 2021년 모두 연말의 입소 인원이 86명이었으며, 86명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동반 가족을 포함한 수임.

[표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단위: 명)

연도	연중 입소인원			연중 퇴소인원			연말 현원		
	소계	입소자	동반이동	소계	입소자	동반이동	소계	입소자	동반이동
2020년	183	136	47	182	129	53	86	71	15
2021년	174	123	51	174	130	44	86	62	24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2023.2.)

- 2020년과 2021년 기준으로 경기도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입소자 특성을 살펴보면, 입소자 연령대는 ‘40대’와 ‘5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20대’의 비율이 높았음. 경기도에 가족보호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없지만, 일반 보호시설인 경우에도 자녀를 동반하고 입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반한 자녀의 연령대는 ‘6세~12세’가 40%대로 가장 높고, ‘3세~6세 미만’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 지원 내용의 경우, ‘심리·정서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54.0%, 2021년에는 58.7%였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자녀를 동반하고 입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자녀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는데, 2020년에는 피해자 지원과 동반 자녀 지원 비율이 각각 71.2%, 28.8%였고, 2021년에는 피해자 지원과 동반 자녀 지원 비율이 83.1%, 16.9%였음. 동반 자녀 지원은 학교문제지원, 학습·놀이지원, 상담지원, 전학지원, 의료 지원 등임.

3.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가. 기관 현황 조사

1) 조사 개요

- 경기도의 17개의 피해자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기관의 설립, 규모, 입소자 현황, 지원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함. 기관 현황 조사를 위해 도의 협조를 받았으며, 조사는 4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 기관 현황 조사 질문지를 각 기관에 이메일로 발송한 후 회신 받는 형태로 진행하였음.

2) 조사 결과 분석

가) 시설 기본 정보

- 2023년 4월 기준,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기도 내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13개, 성폭력 보호시설은 4개임.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경우 모두 일반보호시설로 13개가 운영 중임. 성폭력 보호시설의 경우 일반보호시설이 3개, 특별보호시설이 1개임.

[표 4] 시설 유형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계	일반보호 시설	가족보호 시설	계	일반보호 시설	특별보호 시설
전체	17	13	13	0	4	3	1
(비율)	(100.0)	(76.5)	-	-	(23.5)	-	-
시설유형별 비율	-	100.0	100.0	0.0	100.0	75.0	25.0

주: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2023.3.) 기준

- 경기도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1998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1~2개씩 설치되면서 꾸준히 증가해왔음. 1990년대 후반에 2개, 2001-2005년에 7개, 2011-2015년에 4개로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은 수의 보호시설이 설치되었음.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고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던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설치되었다면, 성폭력 보호시설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할 수 있음.

[표 5] 설립 시기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17	100.0	13	100.0	4	100.0
1998-2000년	2	11.8	1	7.7	1	25.0
2001-2005년	7	41.2	6	46.2	1	25.0
2006-2010년	1	5.9	0	0.0	1	25.0
2011-2015년	4	23.5	3	23.1	1	25.0
2016-2020년	1	5.9	1	7.7	0	0.0
2021-2022년	2	11.8	2	15.4	0	0.0

- 시설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국비, 도비, 시군비를 매칭하여 지원받고 있는 구조가 일반적임. 시설마다 국비, 도비, 시군비의 지원 비율은 다소 상이하나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의 구조가 전체 17개의 보호시설 가운데 11개(64.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2개의 시설은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시설로 현재 시군비 100%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표 6] 예산 지원 구조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17	100.0	13	100.0	4	100.0
국비 0%, 도비 0%, 시군비 100%	2	11.8	2	15.4	0	0.0
국비 55%, 도비 17%, 시군비 28%	1	5.9	0	0.0	1	25.0
국비 58%, 도비 12.3%, 시군비 29.7%	1	5.9	1	7.7	0	0.0
국비 64%, 도비 16%, 시군비 20%	1	5.9	1	7.7	0	0.0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11	64.7	8	61.5	3	75.0
국비 76.1%, 도비 6%, 시군비 17.9 %	1	5.9	1	7.7	0	0.0

- 시설 면적의 경우도 20평대에서 200평대까지 다양한데, 시설의 유형, 입소자 정원, 운영 주체 및 운영비 지원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다고 할 수 있음.

[표 7] 시설 면적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17	100.0	13	100.0	4	100.0
20평대	2	11.8	1	7.7	1	25.0
30평대	4	23.5	4	30.8	0	0.0
40평대	6	35.3	6	46.2	0	0.0
50평대	2	11.8	1	7.7	1	25.0
60평대	1	5.9	0	0.0	1	25.0
180평대	1	5.9	0	0.0	1	25.0
200평대	1	5.9	1	7.7	0	0.0

주. 20평대인 경우, 1개의 시설은 활용할 수 있는 그 외 공간(11.8평)이 있음.

- 시설 면적이 시설마다 다르고, 입소자들이 사용하는 방과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의 배분 방식도 상이함. 이를테면 방이 3개인 경우, 1개의 방은 종사자들의 업무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입소자들을 위한 방은 2개가 됨. 방이 4개 이상인 경우 사무실로 1개를 사용하고, 1개는 상담실이나 숙직실로 사용하여 사무 공간을 위한 방이 2개가 되기도 하는데, 입소자의 상황에 따라 상담실이나 숙직실로 사용하던 방을 입소자용 방으로 재배정하기도 하면서 탄력적으로 방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운영하기도 함.
- 사무실/상담실/숙직실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시설은 7개였으며 겸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8개였음. 식당과 조리실을 분리된 공간으로 갖추고 있는 곳은 6개였고, 겸용하고 있는 곳은 11개였음. 시설의 대부분 일반 주택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욕실과 화장실은 겸용이고, 세탁실은 분리되어 있는 구조인 경우가 많음. 세탁실/욕실/화장실을 분리하여 사용한다는 경우는 11개였고, 겸용으로 사용한다는 경우는 6개였음.

나) 시설 입소자 현황

- 시설의 입소자 규모는 10명에서 30명까지 다양했으나 정원이 10명인 시설이 9개로 절반 이상이었음(52.9%).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경우가 정원이 15명인 시설로 4개였음. 가정폭력 보호시설과 성폭력 보호시설 모두 ‘10명’ 이 정원인 시설이 다수였음.

- 입소자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40% 이하인 시설이 6개, 41%~70% 이하인 시설이 8개, 71% 이상인 시설은 3개였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가 41%~70%인 경우가 6개의 시설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보호시설의 경우는 40% 이하인 시설과 41%~70% 이하인 시설이 각각 50%을 차지했음.

다) 시설 종사자 현황

- 시설의 종사자 인력 규모는 시설의 입소자의 정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5명의 종사자 규모의 시설이 7개(4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6명의 종사자 규모로 5개(29.4%)였고, 4명의 종사자 규모 시설은 2개(11.8%)였음.
- 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경력의 경우, ‘시설장’의 경력과 ‘시설장 제외한 종사자’의 경력의 편차가 적지 않았음. 2023년 4월 기준, 17개의 보호시설의 종사자 총 정원은 99명이나 현재 3명이 공석인 상황이었음. 공석을 제외하고 현직에 있는 종사자 96명의 ‘평균 경력’을 살펴보면, 41.36개월(3.45년)이었음. ‘시설장’ 평균 경력은 97.06개월(8.09년)이었고, ‘종사자(시설장 제외)’ 평균 경력은 30.22개월(2.52년)이었음.

[표 8] 종사자 평균 경력

(단위: 개월, 명)

구분	전체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평균경력	인원 수	평균 경력	인원 수	평균경력	인원 수
전체	41.36	96	31.92	73	71.35	23
시설장	97.06	16	73.25	12	168.50	4
종사자(시설장 제외)	30.22	80	23.79	61	50.89	19

주1. 결측값은 제외하고 분석함. 17개 기관의 종사자 총 인원(정원)은 99명이나 현재 3명(시설장 1명, 시설장 이외 종사자 2명)이 공석임.

주2. 시설장 평균 경력은 16개 시설 기준, 종사자(시설장 제외) 평균 경력은 17개 시설 기준

라) 시설 운영 전반

- 17개 보호시설 모두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시설 운영 위원회/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종사자 관련 규정(업무 분담, 복무 규정, 종사자 보수 지급 규정 등), 재무·회계 관련 규정, 입소자 관련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입소자 대상 생활지침의 경우, 식사 및 청소, 외출 및 취침, 프로그램 참여, 동반자녀 관리, 시설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엄수 등 시설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상이하지만,

대부분 시설 내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하여 입소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었고, 입소자들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조율해나가기도 했음.

- 시설들은 지역의 상담소, 의료기관, 청소년/아동/한부모 및 기타 다른 복지시설, 법률구조기관, 경찰, 해당 지자체 및 행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지원센터,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면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음. 시설의 설립시기, 지역의 가용자원 등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었음.

나. 관계자 면접조사

1) 조사 개요

-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함. 이용자의 경우 시설의 종사자를 통해서 소개받았으며, 면접 일시, 면접 방식 등은 면접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함. 면접 조사 내용은 종사자와 이용자의 위치를 고려하여 구성함. 종사자의 경우, 최근 입소자 현황 및 특성, 시설 운영 규칙, 시설 운영 시 어려운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이었고, 이용자(입소자)의 경우는 입소 경로, 시설 생활 적응과정, 시설에서 제공받은 지원, 퇴소 이후 계획 등이었음.
- 면접조사는 종사자 6명, 이용자 5명으로 총 11명을 진행하였음. ‘종사자’의 경우 가정폭력 보호시설 종사자 3명, 성폭력 보호시설 종사자 3명이었으며, 이들의 직위는 소장(시설장), 팀장, 사무국장, 일반 상담원 등 다양했음. 경력의 경우도 5년부터 17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음. ‘이용자’의 경우는 5명으로, 연령대는 30대 2명, 40대 2명, 60대 1명이었음. 자녀를 동반하여 입소한 경우가 3명이었고, 한 사례는 다른 시설로 이동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였음.

2) 조사 결과 분석

가) 보호시설 연계 및 입소 과정

- 보호시설 입소는 대부분 경찰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등을 통해 이루어졌음.

경찰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상담소를 안내하여 긴급피난처(임시보호시설)에서 3~4 일 동안 지내다가 보호시설로 입소하는 경우가 다수였음. 그리고 시설의 위치는 철저하게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입소자들도 자신들이 어떠한 지역에 있는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이동하게 되는 구조였음.

- 보호시설의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가 보호시설 종사자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생활환경 및 주의 사항 등을 문의하기도 하는데, 다인 1실, 핸드폰 사용 제한, 기타 시설 생활 시 지침 등을 안내받고 입소를 망설이거나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음.
- 자녀동반 여부, 반려동물 동반 여부 등이 입소 여부 결정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었는데, 자녀 및 반려동물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으로 입소 후에도 시설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나) 보호시설의 환경과 시설 생활에 적응

-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시설 생활의 규칙들을 안내받고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면서 생활하게 됨. 시설의 입소 시기, 자녀 동반 여부, 연령대 등을 고려해 본인 및 가족이 생활하게 될 방을 배정받고, 같은 방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음.
- 입소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들을 갖게 됨.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경험들을 재해석하기도 하면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상처들을 치유하게 됨.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면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게 됨.
- 시설 생활 가운데 내 입소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식사 해결 방식이었음. 많은 시설에서 입소자나 종사자들이 식사 당번을 정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형태로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나 장애인의 경우 식사당번을 수행하기 쉽지 않고, 요리 등을 할 수 있더라도 자주 반복되는 식사 준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음. 시설에서도 입소자의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사자가 함께 식사를 준비하거나 종사자들이 전적으로 식사 당번을 수행하는 등 식사해결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었음.

다) 감소하는 입소자와 입소자의 다양화

- 보호시설의 경우 일반보호시설과 장애인보호시설을 구분하고 있지만, 장애인 보호시설이 매우 적고, 장애의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인 피해자들의 경우 보호시설을 이용하기에 더 많은 제약이 있었음. 현재 일반보호시설에 장애인 입소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시설 내의 구조가 장애인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아서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시설 내에서 생활이 쉽지 않았음. 시설 종사자들의 경우도 장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장애인 지원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 입소자를 지원하는데 대한 어려움과 부담을 가지고 있었음.
- 최근에는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의 입소도 적지 않아서 입소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이나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종사자나 다른 입소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요구되고 있었음.

라) 입소기간의 제약과 퇴소 이후의 삶을 준비

- 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퇴소시점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타 다른 복지시설이나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를 시도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퇴소 이후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대두되고 있었음.
- 많은 입소자들이 반복되는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데에는 자녀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지만, 보호시설 퇴소의 삶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존재함. 보호시설 거주 기간이 제한적이고, 시설 내 생활 시 준수해야할 사항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많은 입소자들이 시설 내 거주기간 동안 직업 훈련에 참여하고, 자격증 취득을 하면서 퇴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음.

4. 정책 제언

가. 가족/장애인보호시설 확대 및 시설 유형 정비

- 가족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등 시설의 유형이 입소 대상이나 장애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일반보호시설로 장애인 보호시설이나 가족보호시설은 수적으로 매우 적은 상황임. 현재 경기도의 17개 시설 가운데 가족보호시설은 없으며, 장애인 대상 보호시설은 1개가 설치되어 있음. 일반보호시설에 자녀동반 입소가 적지 않고, 장애인 입소 문의 및 입소자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기존의 시설의 유형을 정비하고 가족보호시설이나 장애인 보호시설을 추가 지정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나. 최소한의 개인 공간 확보 방안 모색: 1인 1실

- 폭력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입소자별 공간 관련 지침에 의하면 침실 및 거실의 실제 면적은 입소자 1인당 6.6㎡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경기도 내 보호시설의 시설 면적, 시설 내 입소자 현황 등에 따라 1인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상이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사적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개인의 사생활이 중요시되고, 생활방식이 변화되면서 1인 1실에 대한 요구나 문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지원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 개인의 상황이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처음부터 주거지원시설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호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좀 더 개인 생활을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 공개형 시설 등 시설 운영 방식의 다양화

-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비공개 형태로 운영 중임.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 등이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될 필요도 있지만, 비공개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호시설 입소자들의 생활

시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 측면이 있음. 핸드폰이나 pc 사용 제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 시설 입소 이전의 생활방식에 일정한 변화를 주어야 함. 폭력의 유형, 피해자의 상황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호시설의 보안의 필요성이나 정도도 상이할 수 있음. 공개 여부 및 정도, 입소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보호시설의 보안 수준, 운영 형태 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라. 입소기간의 탄력적 운영 및 퇴소 이후의 연계지원 강화

-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은 기본적인 숙식문제를 해결해주지만, 보호시설 퇴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퇴소 이후 가장 큰 걱정이 거주지, 생계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입소자들이 보호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며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음. 많은 시설이 최대 1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단기보호시설인데,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1년 정도의 기간으로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취업능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음. 특히 청소년이나 장애인의 경우 입소기간 제한으로 퇴소 이후의 삶의 불안정성이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입소자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퇴소 시점을 일정기간 연장하거나 퇴소 이후의 연계지원을 좀 더 다양화하여 퇴소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마. 장애인 입소자 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 일반보호시설에 장애인의 입소가 증가하면서 종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정보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입소할 경우 종사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 클 수 있음. 일부 시설에서는 장애인 입소자가 증가하면서 장애인 지원에 대한 정보나 관련 기관 등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개별적인 기관 차원이 아니라 종사자 보수교육이나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모든 종사자들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바. 보호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

- 보호시설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여전히 보호시설의 존재나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 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으로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신고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보호시설과 같이 숙식을 제공받으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거나, 보호시설 내 생활 통제의 정도가 매우 높고 엄격하여 개인의 자유가 거의 제한된다는 등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함. 최근에는 주거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개인이 경제적 상황, 가족상황, 연령 등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주거지원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이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사.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 반려동물, 반려가족으로 불릴 만큼 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보호시설 입소 시에도 반려동물 동반 입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왔음. 특히 반려동물을 계기로 자신이 경험한 폭력을 인지하거나 반려동물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 회복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현재 경기도에 반려동물 동반 입소가 가능한 시설은 없으며, 반려동물 동반 입소는 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연동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고려해야할 부분임. 현 시점에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경기도에서는 2020년부터 보호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해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목 차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5
3. 연구의 범위	6
4. 선행연구 검토	8
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관련 연구	8
나. 기타 지원시설 관련 연구	9

제 2 장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주요 기능과 현황

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유형과 주요기능	13
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3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5
다. 성폭력·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사업	17
2.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현황과 특성(2020-2021년)	19
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9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2

제 3 장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 기관 현황 조사	29
가. 조사 개요	29
나. 조사 결과 분석	30

2. 관계자 면접조사	40
가. 조사 개요	40
나. 면접조사 참여자	41
다. 면접조사 결과 분석	42

제 4 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	61
가.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61
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의미와 현실적 한계	62
2. 정책 제언	65
가. 가족/장애인보호시설 확대 및 시설 유형 정비	65
나. 최소한의 개인 공간 확보 방안 모색: 1인 1실	66
다. 공개형 시설 등 시설 운영 방식의 다양화	66
라. 입소기간의 탄력적 운영 및 퇴소 이후의 연계지원 강화	67
마. 장애인 입소자 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68
바. 보호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	68
사.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69

참고문헌	71
------------	----

부 록

기관서면조사지	75
---------------	----

표 목 차

[표 1-1] 피해자 지원기관 현황(경기도, 전국)	4
[표 1-2] 피해자 보호시설 관련 선행연구	9
[표 1-3] 기타 지원시설 관련 선행연구	10
[표 2-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주요 업무	13
[표 2-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유형 및 입소기간	14
[표 2-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정원과 시설규모	14
[표 2-4] 시설 정원 별 종사자 규모	15
[표 2-5]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주요 업무	16
[표 2-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유형 및 입소기간	16
[표 2-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정원 별 종사자 규모	17
[표 2-8]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18
[표 2-9] 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사업	18
[표 2-10]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인원	19
[표 2-1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연령대	19
[표 2-1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경로	20
[표 2-1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0
[표 2-1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내용	21
[표 2-15] 피해자 특성 및 피해유형	21
[표 2-16]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현황	22
[표 2-17] 입소 정원 및 시설의 종사자 수	22
[표 2-18]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23
[표 2-19]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연령대	23
[표 2-2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시 동반 가족	24
[표 2-2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경로	24

[표 2-22] 가정폭력 피해자 입소기간	25
[표 2-2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내용	25
[표 3-1] 주요 조사 내용	29
[표 3-2] 시설유형	30
[표 3-3] 설립시기	30
[표 3-4] 예산지원구조	31
[표 3-5] 시설면적	31
[표 3-6] 시설 세부 구조1: 침실/방, 거실	32
[표 3-7] 시설 세부 구조2: 사무실/상담실/숙직실, 식당/조리실, 욕실/세탁실/화장실	32
[표 3-8] 시설 입소자 정원	33
[표 3-9] 시설 입소자 현원	33
[표 3-10] 정원 대비 현원 비율	34
[표 3-11] 종사자 수(정원)	34
[표 3-12] 종사자 평균 경력	35
[표 3-13] 시설 환경에 대한 평가(평균)	36
[표 3-14] 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	36
[표 3-15] 입소자 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37
[표 3-16] 주요 조사 내용	40
[표 3-17] 면접 참여자(종사자)	41
[표 3-18] 면접 참여자(이용자)	41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	7
------------------------	---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연구의 범위
4. 선행연구 검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해왔는데, 피해자 보호 시설의 구조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도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특히 보호시설의 입소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보호시설의 현재 구조나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확대되고 있음.¹⁾
-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강도와 양상이 변화하면서 지속되고 있음.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거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폭력에서 시작하여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적지 않음. 「2022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평생 동안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은 36.5%, ‘평생 동안 친밀한 파트너에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은 26.9%로 나타났음(정혜원 외, 2022: 99-100).²⁾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력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지를 이동하거나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단기간에 새로운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긴급피난처, 임시보호시설, 중장기 보호시설 등 피해자가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폭력 상황을 벗어나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크게 ‘상담소(이용시설)’와 ‘보호시설(생활시설)’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상담소는 피해 상담을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보호시설은 상담소와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숙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 2022년 6월 10일, 한국여성의전화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의 공동주최로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토론회에서 기존의 쉼터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고 입소자들의 개별적 상황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쉼터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한겨레, 2022.6.10.일자, “가정폭력 피해 늘었지만 쉼터 입소는 왜 줄었을까”, www.hani.co.kr/arti/society/women/1046537.html).

2) 「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평생 동안 5가지 유형의 폭력(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경제적 폭력) 가운데 한 가지 유형의 폭력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34.9%였고, 평생 동안 친밀한 관계에서 1가지 유형의 폭력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16.1%였음(장미혜 외, 2021: 19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법을 기반으로 전국 각 시도에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 2023년 1월 기준, 경기도에는 13개의 가정폭력 보호시설, 4개의 성폭력 보호시설이 운영 중임.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67개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4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 중으로, 경기도에는 가정폭력 보호시설과 성폭력 보호시설이 각각 전국의 19.4%, 11.8%가 설치되어 있음.

[표 1-1] 피해자 지원기관 현황(경기도, 전국)

(단위: 개소, %)

구 분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경기도	41 (19.3)	13 (19.4)	27 (16.1)	4 (11.8)	5 (16.1)	7 (10.8)
전 국	212	67	168	34	31	65

자료. 2023년 1월 기준.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는 지속되고 있으나 피해자 지원기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보호시설의 이용현황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경기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시설의 운영현황, 입소자들의 특징, 보호시설의 주요 이슈 등을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시설이 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완되거나 개선되어야할 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보고자 함.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제도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설치 근거 및 주요 업무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규모 및 현황 등
-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및 특성
 - 경기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본 정보 및 운영 현황
 - 피해자 지원기관의 최근 주요 이슈, 입소자 특성 등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개선 방안
 -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한계 및 문제점
 - 효과적인 보호시설 운영 방안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기타 지원시설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경기도 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및 운영 실적 검토 등
- 시설 현황 조사 및 관계자 면접 조사
 - 시설 현황 조사: 경기도 내 17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현황 조사(서면조사)
 - 관계자 면접조사: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개별 및 집단면접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 내용, 정책 과제 등에 대한 자문 의견 청취 및 반영

3. 연구의 범위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폭력의 유형에 따라 관련법이 각각 다른 시기에 제정되면서 각각의 폭력의 유형에 따라 상담소와 보호(지원)시설로 구분되어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리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상담소, 긴급상담 및 위기 개입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 상담, 조사, 치료 등을 포괄하는 통합지원센터로서 해바라기센터, 불법 촬영된 영상물 삭제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는 이주여성 폭력피해지원기관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 여성폭력 피해 보호시설로는 대표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자립지원시설이 있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나 자활/자립지원시설은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용자들의 상황이나 욕구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자 감소 현상에 대한 문제의 식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가정폭력 보호시설과 성폭력 보호시설에 초점을 두고자 함. 연구를 착수하는 시점인 2023년 1월 기준, 경기도 내 국비, 도비, 시군비 지원을 받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보호시설은 17개가 운영 중으로 본 연구는 17개의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경기도 내 여성폭력 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함.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



4. 선행연구 검토

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관련 연구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연구는 피해자 지원체계/제도에 대한 이해, 지원기관의 현황 분석, 현재 피해자 지원체계/제도의 한계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는데, 피해자 보호시설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 피해자 보호시설의 구조나 기능 등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지원기관의 평가체계 관련 연구에서 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었고, 피해자 보호시설을 포괄하여 피해자 지원체계 전반을 다루는 연구들이 다수임.
- 서해정 외(2011)의 연구는 경기도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검토하고, 피해자 및 지원기관 실무자 등의 면접을 통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피해자 지원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사자 및 시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지원체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경기도의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변화순 외(2009)는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서비스 제공 수준을 검토하고, 폭력피해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통합방안을 모색하였음.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강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부 기관의 기능 통합,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접근성 강화, 여성긴급전화 1366 연계기능 및 긴급피난 기능 강화, 중증 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기관 연계활성화, 사후관리를 위한 표준적 가이드라인 제시, 정기적인 실무자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제안하고 있음.
- 홍선영, 조안나(2016)는 부산지역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현황과 역할을 검토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여성폭력 관련시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수사례 공유, 긴급지원센터의 연계 기능 활성화, 수사·재판 담당자의 협력 및 인식 강화, 자활지원 프로그램 및 자활센터 설치, 장애인 피해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여성폭력예방교육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음.

[표 1-2] 피해자 보호시설 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구내용	연구방법	정책제언
서해정 외 (2011)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 경기도 여성폭력 범죄 현황 - 피해자 지원체계 운영 현황 및 지원실적 - 피해 당사자의 연계 경험 및 시설 대표자의 정책욕구	- 기관방문: 8곳 - 심층면접: 피해자 11명, 실무자 5명 - FGI: 시설장 7명, 시설장 6명(총 2회) - 설문조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75곳	- 여성폭력피해자 관련시설 확충 및 지역별 적정규모 유지 - 운영지침개선을 위한 법·제도 구축 - 종사자 및 시설 역량강화, 여성폭력 지원체계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운영의 내실화
변화순 외(여성부) (2009) 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의 효과적 통합 연계 방안 연구 (여성부)	- 서비스 질 평가 - 민간상담소,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기능 점검 및 기관 간 연계 현황 - 원스톱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 아동센터 기능 조정 및 통합 방안 -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 및 전달체계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 추진단 및 실무진 회의 - 심층면접: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각 지역 대표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청회	- 적정 개소 수에 근거한 접근성 개선, 장애인 통합상담소 기능 강화 및 장애인 보호시설 설치 - 여성긴급전화 1366 연계기능 및 긴급피난 기능 강화, 중증 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기관 연계활성화, 사후관리를 위한 표준적 가이드라인 제시, 정기적인 실무자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경찰에 피해자 확인 통보 - 평가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 여성·아동지역연대 구성 및 활성화, 여성폭력시설과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 활성화
홍선영, 조한나. (2016). 여성폭력 관련시설 여건분석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 여성폭력 개념 - 여성폭력 관련 정책을 통한 부산지역 피해자 보호시설 기관 현황 및 역할 - 조사 및 자문을 통한 시설 여건 및 협력체계,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제언	- 설문조사: 부산지역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대상 시설 업무수행 및 근무여건, 기관연계, 상담서비스, 지원체계 등 여건 분석 - 초점집단면접: 대표자 8명, 실무자 6명	- 종사자의 처우 개선, 교육 지원체계 마련, 24시간 교대제 근무에 따른 건강·안전 문제 고려 - 여성폭력 관련시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례관리 우수사례 공유, 긴급지원센터의 연계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수사·재판 담당자의 협력 및 인식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자활지원 프로그램 및 자활센터 설치, 장애인 피해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여성폭력예방교육 확대

나. 기타 지원시설 관련 연구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주거를 기반으로 일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한부모 지원시설 등과 유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지만 아동청소년이나 한부모 등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연

구를 참조할 수 있음.

- 송이은 외(2020)는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종사자 역할 등을 검토함.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진행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함. 아동의 주거권 및 공공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의 참여권 보장하며,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정책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유영재 외(2015)는 서울 소재 청소년 일시 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청소년 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쉼터 이용자들의 특성, 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음. 청소년 보호시설의 개선방안으로는 쉼터 유형별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통합정보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이선형 외(2021)는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시설에 대한 이용 만족도, 시설의 주요 기능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음.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재구조화하고, 주거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각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음.

[표 1-3] 기타 지원시설 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구내용	연구방법	정책제언
송이은 외. (2020).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질 향상 방안 연구	-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거주 공간 및 종사자 역할, 필요 거주공간 및 주변환경 요건, 관계 특성 조사 - 구성원 관계 중심의 아동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질 진단 및 향상 방안	- 설문조사: 종사자 129명, 아동 154명 - 면접조사: 시설장 15명, 종사자 9명, 아동 11명	- 아동의 주거권 및 공공의 주거 지원 강화 -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족 구성 시 아동의 참여권 보장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정책을 통한 맞춤형 지원강화
유영재 외 (2015). 위기청소년 보호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울시 위기청소년 보호시설 문제점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개선방안 제시	- 개별 심층면접조사: 서울 소재 일시 쉼터 종사자 2명	- 쉼터 유형별 본래의 기능 강화: 일시 쉼터 이웃리치 기능 강화, 단기·중장기 쉼터의 특성화 및 확대 편성 - 지원 사각지대 보완 - 통합 정보관리체계 마련
이선형. (2021).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 및 정책 수요 조사 -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 설문조사: 서울 한부모가족지원시설 이용자 128명 - 시설장 사면조사 및 간담회 19명 - 면접조사: 한부모 33명	- 서비스전달체계의 점검 및 재구조화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 - 한부모가족 주거서비스 확대 및 다각화

II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주요 기능과 현황

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유형과 주요기능
2.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현황과 특성(2020-2021년)

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유형과 주요기능

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 보호시설의 유형과 주요 업무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법 제13조에서 각 보호시설의 주요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성폭력 보호시설은 숙식 제공을 기반으로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표 2-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주요 업무

법률명	법조문
성폭력 방지법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①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 3. 30.>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 제11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2. 3.>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성폭력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성폭력방지법」 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성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및 피해 특성에 따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입소기간, 지원 내용 등은 시설의 유형에 따라 상이함.
- 일반보호시설은 기본적으로 1년 동안 기거할 수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 ‘만 19세’에 도달할 때까지 기거할 수 있음. 특별지원보호시설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19세까지 기거할 수 있으나 19세에 도달한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표 2-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유형 및 입소기간

유형	입소대상 및 기간
일반보호시설	일반·장애인 등 피해자, 기본 1년 이내+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 피해자, 기본 2년 이내+피해 회복 시까지 연장 가능
특별지원보호시설	19세 미만의 친족 성폭력 피해자, 19세까지+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주. 성폭력방지법 제12조, 제16조의 내용을 정리.

2) 보호시설의 규모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유형별 정원 및 시설의 규모에 대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11. 11.)에서 정하고 있음. 보호시설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적 공간, 시설, 물품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보호시설에는 침실 및 거실, 목욕실, 식당 및 조리실, 세탁실,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조권 확보, 환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재난상황이나 비상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개인이 주거 및 생활하는데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원 규모별로 최소한으로 확보되어야 할 면적도 정해두고 있음. 복도 등 공용공간을 제외하고, 침실 및 거실의 실제 면적은 입소자 1인당 6.6㎡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표 2-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정원과 시설규모

시설의 종류	정원 규모별 연면적			
	7명 이하	8명 이상 10명 이하	11명 이상 15명 이하	16명 이상 20명 이하
일반보호시설	-	99㎡ 이상	165㎡ 이상	198㎡이상
장애인보호시설	-	132㎡ 이상	198㎡ 이상	264㎡ 이상
특별지원 보호시설	-	132㎡ 이상	198㎡이상	264㎡ 이상

자료: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규모

- 또한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숙식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도 제공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가 배치되고,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 공간 등도 확보되어야 함. 시설의 유형, 입소 정원 등에 따라 종사자 규모는 차이가 있음.

[표 2-4] 시설 정원 별 종사자 규모

(단위: 명)

시설의 종류		보호시설 정원			
		7명 이하	8명 이상 10명 이하	11명 이상 15명 이하	16명 이상 20명 이하
일반보호시설	시설장	-	1	1	1
	상담원	-	2	2	2
	보조원	-	1	1	2
	총계	-	4	4	5
장애인 보호시설	시설장	-	1	1	1
	상담원	-	3	3	3
	보조원	-	1	2	3
	총계	-	5	6	7
특별지원 보호시설	시설장	-	0	1	1
	상담원	-	0	4	4
	보조원	-	0	2	2
	총계	-	0	7	7

자료: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5. 종사자의 수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 보호시설의 유형과 주요 업무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며, 법 제6조와 제8조에서 각 시설의 주요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또한 상담소와 보호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담소는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상담, 의료, 법률, 유관기관 연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보호시설은 숙식 제공을 기반으로 하여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보호시설의 경우, 숙식 제공, 심리상담 및 치료, 수사재판지원, 의료지원뿐 아니라 자립/자활교육 및 취업 정보의 제공 등 경제적 독립을 위한 기초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음.

[표 2-5]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주요 업무

법률명	법조문
가정폭력 방지법	<p>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p>②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삭제 <2015. 6. 22.> [전문개정 2007. 10. 17.]</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먼저 입소 가능 기간에 따라 단기보호시설과 장기보호시설로 구분되어 있음.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까지 머물 수 있으나 3개월씩 2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주거할 수 있음. 장기보호시설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할 수 있음.

[표 2-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유형 및 입소기간

유형	입소대상 및 기간
단기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등, 6개월+3개월의 범위 내에서 2회 연장 가능
장기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등, 2년 이내
장애인 보호시설	장애인 피해자 등, 2년 이내

주.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 2의 내용을 정리.

-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경우 가족동반여부에 따라 가족이 함께 입소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과 일반보호시설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가족보호시설은 소수에 불과하여 일반보호시설에 자녀를 동반하여 입소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장애의 유무에 따라 일반보호시설과 장애인보호시설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장애인 보호시설의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장애인이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음.

2) 보호시설의 규모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규모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연령별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 방지 등을 위한 시설이나 기구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규모는 시설 입소 정원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보호시설의 재정 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보호시설의 경우 입소정원 10명당 보조인력 1명을 증원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표 2-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정원 별 종사자 규모

(단위: 명)

구분	5명 이상 10명 이하	11명 이상 30명 이하	31명 이상
보호시설의 장	1	1	1
상담원	2	3	4
총계	3	4	5

자료: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5. 종사자의 수

다. 성폭력·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사업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와 성폭력방지법 제3조에 근거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 퇴소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사업’이 이루어져왔음.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고, 보호시설 입소기간 내에 자립을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호시설 퇴소 이후에도 일정한 주거 공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기 때문임.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적응을 돕고자 하는 것임.
- 「가정폭력방지법」 제8조의5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의 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임.

[표 2-8]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법률명	법조문
가정폭력 방지법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제4조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본조신설 2009. 5. 8.]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피해 주거지원사업은 2008년에 시범적으로 시작한 후 2022년까지 꾸준히 확대되어왔으며, 2022년 12월 기준, 전국에 354호의 주거지원시설이 운영 중임(여성가족부, 2023: 25). 여성폭력 피해 주거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는 방식임.

[표 2-9] 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사업

구분	내용
입주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 여성 및 동반 가족
입주자 선정	(기본원칙)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여성으로서 자립·자활의 의지가 있는 사람 -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이 편리한 주택에 입주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가능 (입주 우선 대상)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 상담소 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아동·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의 장,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우선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주거지원 기간 및 입주 방식	- 신규 입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단 1가구의 가구구성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호에 1가구 입주 가능

자료: 여성가족부(2023). 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98-100.

-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성폭력특별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피해자인 경우 지원자격이 됨. 가정폭력방지법 제2조제3호에 의한 피해자로서 보호시설 입소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여성가족부, 2023: 157, 334).

2.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현황과 특성(2020-2021년)

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퇴소 인원, 입소자 연령대, 입소경로, 입소기간, 지원내용 등을 기준으로 보호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입·퇴소 인원

- 경기도에는 2020년과 2021년에 5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 중이었고, 각 연도 말 기준으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각각 45명, 29명이었음. 이 가운데 장애인 입소자는 각각 25명, 16명으로 장애인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10]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인원

(단위: 개소, 명)

연도	개소 수	입소정원	상근 종사자수	구분	연도 중 입소인원	연도 중 퇴소인원	12월 말 현원
2020년	5	65	30	전체	20	20	45
				장애인	5	5	25
2021년	5	-	30	전체	19	35	29
				장애인	9	17	16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2023.2.)

2) 입소자 연령대

- 보호시설 입소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13세~18세 이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19세~24세 이하’, ‘25세~64세 이하’ 순임.

[표 2-1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연령대

(단위: 명, %)

연도	구분	계	5세 미만	5-12세 이하	13-18세 이하	19-24세 이하	25-64세 이하	65세 이상
2020년	전체	45 (100.0)	0 (0.0)	4 (8.9)	18 (40.0)	12 (26.7)	9 (20.0)	2 (4.4)
	장애인	25 (100.0)	0 (0.0)	2 (8.0)	9 (36.0)	7 (28.0)	6 (24.0)	1 (4.0)
2021년	전체	29 (100.0)	0 (0.0)	2 (6.9)	15 (51.7)	7 (24.1)	5 (17.2)	0 (0.0)
	장애인	16 (100.0)	0 (0.0)	1 (6.3)	5 (31.3)	5 (31.3)	5 (31.3)	0 (0.0)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2023.2.)

3) 입소 경로

- 보호시설의 입소 경로를 살펴보면, ‘성폭력 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복지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입소자의 연령대가 ‘10~20대’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2-1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경로

(단위: 명, %)

연도	계	본인	1366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일반 행정기관	경찰서 피출소	일반 복지시설	학교교사	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기타
2020년	45 (100.0)	0 (0.0)	9 (20.0)	10 (22.2)	0 (0.0)	0 (0.0)	0 (0.0)	4 (8.9)	0 (0.0)	0 (0.0)	19 (42.2)	3 (6.7)
2021년	29 (100.0)	0 (0.0)	2 (6.9)	3 (10.3)	0 (0.0)	0 (0.0)	0 (0.0)	4 (13.8)	0 (0.0)	0 (0.0)	17 (58.6)	3 (10.3)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3.2.)

4) 입소기간

- 입소기간의 경우는 ‘1개월 초과~6개월 이하’, ‘6개월 초과~1년 이하’, ‘3년 초과’ 하는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3년 초과’ 한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적임.

[표 2-1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단위: 명, %)

연도	구분	계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6월 이하	6개월 초과~1년 이하	1년 초과~2년 이하	2년 초과~3년 이하	3년 초과
2020년	전체	20 (100.0)	5 (25.0)	4 (20.0)	5 (25.0)	3 (15.0)	1 (5.0)	2 (10.0)
	장애인	5 (100.0)	1 (20.0)	1 (20.0)	0 (0.0)	1 (20.0)	1 (20.0)	1 (20.0)
2021년	전체	35 (100.0)	1 (2.9)	5 (14.3)	7 (20.0)	4 (11.4)	2 (5.7)	16 (45.7)
	장애인	17 (100.0)	0 (0.0)	0 (0.0)	3 (17.6)	1 (5.9)	2 (11.8)	11 (64.7)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3.2.)

5) 지원 내용

- 지원 내용의 경우, ‘심리·정서 지원’이 40~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적 지원’, ‘자립지원’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학교문제 지원’의 경우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입소자 가운데 10~2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

[표 2-1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내용

(단위: 건, %)

연도	계	심리·정서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적 지원	학교문제 (전학)지원	자립 지원	기타
2020년	24,283 (100.0)	11,539 (47.5)	203 (0.8)	5,606 (23.1)	2,256 (9.3)	2,790 (11.5)	1,889 (7.8)
2021년	18,756 (100.0)	10,202 (54.4)	877 (4.7)	3,368 (18.0)	1,688 (9.0)	959 (5.1)	1,662 (8.9)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3.2.)

6) 입소자 특성

- 입소자의 경우, 장애인 입소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2020년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각각 44.4%, 55.6%였으며, 2021년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각각 44.8%, 55.2%였음. 또한 폭력 피해 유형을 ‘강간 및 유사 강간’, ‘성추행’, ‘기타’로 분류해보면, 2020년과 2021년 ‘강간 및 유사 강간’의 비율이 각각 55.6%, 51.7%로 피해 유형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

[표 2-15] 피해자 특성 및 피해유형

(단위: 명, %)

연도	피해자 본인						피해유형			
	합계 (A+B)	비장애인 (B)	장애인				계	강간 및 유사강간	성추행	기타
			계(C)	신체	정신	기타				
2020년	45 (100.0)	20 (44.4)	25 (55.6)	1	22	2	45 (100.0)	25 (55.6)	16 (35.6)	4 (8.9)
2021년	29 (100.0)	13 (44.8)	16 (55.2)	1	13	2	29 (100.0)	15 (51.7)	14 (48.3)	0 (0.0)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3.2.)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 가정폭력 보호시설 현황

- 2022년 6월 기준, 경기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11개가 운영 중이며, 모두 일반보호시설임.³⁾ 전국 기준으로는 65개가 운영 중이며, 일반보호시설은 42개, 가족보호시설은 23개임.

[표 2-16]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65	11	3	3	1	4	1	1	11	5	3	4	4	4	2	6	2
일반시설	42	8	2	2	1	2	0	1	11	4	1	1	2	2	2	3	0
가족보호시설	23	3	1	1	0	2	1	0	0	1	2	3	2	2	0	3	2

주. 2022년 6월 30일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상반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p.5.

2) 입소 정원 및 시설의 종사자 수

- 2020년과 2021년에 11개의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은 총 154명이었고, 종사자는 65명이었음.

[표 2-17] 입소 정원 및 시설의 종사자 수

(단위: 개소, 명)

연도	개소 수	입소정원	종사자수		
			계	상담원	비상근직 + 자원봉사자
2020년	11	154	56	56	0
2021년	11	154	65	65	0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3.2.)

3) 2023년 4월 기준, 경기도에는 13개의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운영 중인데, 본 연구의 조사 결과 2022년에 설치된 2개의 시설은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시군비 지원 100%로 운영되고 있었음. 따라서 2022년 6월 기준으로 제시된 전국의 시설 현황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의 2020-2021년 실적 자료도 11개의 시설을 기준으로 작성됨.

3) 입퇴소 현황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최근 몇 년간의 총 입퇴소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 모두 연말의 입소 인원이 86명이었음. 이때 86명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동반 가족을 포함한 수입.

[표 2-18]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단위: 명)

연도	연중 입소인원			연중 퇴소인원			연말 현원		
	소계	입소자	동반이동	소계	입소자	동반이동	소계	입소자	동반이동
2020년	183	136	47	182	129	53	86	71	15
2021년	174	123	51	174	130	44	86	62	24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3.2.)

4) 입소자 연령대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자 연령대는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40대’와 ‘50대’가 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20대’의 비율이 높으나 ‘60세 이상’도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결혼 및 가족관계를 유지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자가 ‘10-20대’의 비중이 높은 것과는 차이가 있음.

[표 2-19]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연령대

(단위: 명, %)

연도	계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20년	136 (100.0)	1 (0.7)	26 (19.1)	23 (16.9)	38 (27.9)	29 (21.3)	19 (14.0)
2021년	123 (100.0)	1 (0.8)	18 (14.6)	24 (19.5)	29 (23.6)	32 (26.0)	19 (15.4)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3.2.)

5) 입소 시 동반 가족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자녀를 동반하고 입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동반한 자녀의 경우 ‘6세~12세’가 40%대로 가장 많았고, ‘3세~6세 미만’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표 2-2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시 동반 가족

(단위: 명, %)

연도	이동을 동반한 피해자 수	동반이동 연령별 현황					
		계	3세미만	3-6세 미만	6세-12세	13세-18세	19세 이상
2020년	35	47 (100.0)	8 (17.0)	10 (21.3)	20 (42.6)	8 (17.0)	1 (2.1)
2021년	44	51 (100.0)	11 (21.6)	18 (35.3)	17 (33.3)	3 (5.9)	2 (3.9)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3.2.)

6) 입소 경로: 지원기관 연계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입소하게 된 경로를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경찰’ 등의 순임. ‘여성긴급전화 1366’ 으로부터 연계되어 입소한 경우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신고나 전화를 하여 ‘긴급보호시설(긴급피난처)’에 3~7일 머물다가 단기보호시설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음.

[표 2-2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경로

(단위: 명, %)

연도	계	본인	가정폭력 상담소	1366	성폭력 상담소	타센터	일반 행정기관	경찰	사회단체 (복지시설)	학교교사	병원	기타
2020년	136 (100.0)	0 (0.0)	21 (15.4)	91 (66.9)	3 (2.2)	9 (6.6)	0 (0.0)	5 (3.7)	4 (2.9)	1 (0.7)	0 (0.0)	2 (1.5)
2021년	123 (100.0)	0 (0.0)	37 (30.1)	74 (60.2)	3 (2.4)	4 (3.3)	2 (1.6)	2 (1.6)	0 (0.0)	0 (0.0)	0 (0.0)	1 (0.8)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3.2.)

7) 입소기간

- 입소기간의 경우는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2개월 이하’, ‘6개월 초과~9개월 이하’, ‘9개월 초과~2년 이하’ 인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설별로 입소기간이 상이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단기 보호시설은 ‘6개월 이하’, 장기 보호시설은 ‘2년 이하’ 를 기본적인 거주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별 입소기간 기준을 고려해서 입소기간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표 2-22] 가정폭력 피해자 입소기간

(단위: 명, %)

연도	계	3일 이하	4일~7일	8일~1개월 이하	1개월 초과~2개월 이하	2개월 초과~3개월 이하	3개월 초과~4개월 이하	4개월 초과~5개월 이하	5개월 초과~6개월 이하	6개월 초과~9개월 이하	9개월 초과~2년 이하
2020년	182 (100.0)	11 (6.0)	22 (12.1)	35 (19.2)	28 (15.4)	11 (6.0)	14 (7.7)	4 (2.2)	7 (3.8)	21 (11.5)	29 (15.9)
2021년	174 (100.0)	10 (5.7)	16 (9.2)	28 (16.1)	26 (14.9)	20 (11.5)	6 (3.4)	4 (2.3)	11 (6.3)	28 (16.1)	25 (14.4)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2023.2.)

8) 지원 내용

- 피해자 지원 내용의 경우, ‘심리·정서적 지원’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54.0%, 2021년에는 58.7%였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자녀를 동반하고 입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자녀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는데, 2020년에는 피해자 지원과 동반 자녀 지원 비율이 각각 71.2%, 28.8%였고, 2021년에는 피해자 지원과 동반 자녀 지원 비율이 83.1%, 16.9%였음. 동반 자녀 지원은 학교문제지원, 학습놀이지원, 상담지원, 전학지원, 의료 지원 등임.

[표 2-2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내용

(단위: 건, %)

연도	전체 (A+B)	피해자 지원						동반아동지원 계(B)
		계(A)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적 지원	자립지원	기타	
2020년	19,965 (100.0)	14,225 (71.2)	7,680	561	1,849	1,247	2,888	5,740 (28.8)
2021년	19,746 (100.0)	16,400 (83.1)	9,629	609	2,981	1,128	2,053	3,346 (16.9)

주. 동반아동지원은 '학교문제지원+학습놀이지도+아동상담+학교전학지원+의료지원+기타지원' 건수임.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2023.2.)

Ⅲ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 기관 현황 조사
2. 관계자 면접조사

1. 기관 현황 조사

가. 조사 개요

- 경기도의 17개의 피해자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기관의 기본 정보,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함.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평가지표에 대한 선행연구 및 기타 지원 시설 관련 연구의 질문지를 참조하였음.⁴⁾ 연구자가 질문지 초안을 작성한 후 전문가 자문회의, 도청의 사업 관련 담당자 등의 의견을 거쳐 최종본을 완성함.
- 기관 현황 조사를 위해 도의 협조를 받았음. 도의 담당자로부터 기관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도에서 각 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주었음. 도의 협조 공문을 기반으로 본 기관에서도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각 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조사의 목적과 조사 내용 등을 미리 안내한 후 기관 메일로 질문지를 발송함.
- 조사는 4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했으며, 기간 내 회신하지 않은 경우 독려 전화 등을 통해 17개 기관 모두 응답지를 회수하였음. 응답자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기관의 상황에 따라 기관장이나 기관장 외 다른 종사자가 응답하였음.

[표 3-1] 주요 조사 내용

구분	내용
시설 운영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시기, 예산지원 구조, 시설면적, 구비시설 등 - 시설 운영 규칙/지침 - 종사자 규모, 종사자 경력 등 - 시설 구조나 환경 전반에 대한 의견 - 지역의 협력체계
입소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자 정원, 현재 입소자 수, 월 평균 입소자 수 등 - 입소자 생활 규칙, 식사 해결방법 등 -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 장애인 입소자의 여부, 정도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자 특성, 입소자 감소 경향에 대한 의견 - 반려동물, 1인1실 등 이슈 - 운영 시 어려운 점, 가장 우선적인 개선 과제 등

4)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대한 평가지표 관련 연구는 이미정 외(2019), 문미경 외(2016: 2019), 기타 지원 시설 관련 연구는 이선형 외(2021)를 참조하였음.

나. 조사 결과 분석

1) 시설 기본 정보

- 2023년 4월 기준,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기도 내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13개, 성폭력 보호시설은 4개임.⁵⁾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모두 일반보호시설이며, 성폭력 보호시설의 경우 일반보호시설이 3개, 특별보호시설이 1개임.

[표 3-2] 시설유형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계	일반보호 시설	가족보호 시설	계	일반보호 시설	특별보호 시설
합계	17	13	13	0	4	3	1
(비율)	(100.0)	(76.5)	-	-	(23.5)	-	-
시설유형별 비율	-	100.0	100.0	0.0	100.0	75.0	25.0

주: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2023.3.) 기준

- 경기도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1998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1~2개씩 설치되면서 꾸준히 증가해왔음. 1990년대 후반에 2개, 2001-2005년에 7개, 2011-2015년에 4개로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은 수의 보호시설이 설치되었음.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고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던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설치되었다면, 성폭력 보호시설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1개씩 설치되었음.

[표 3-3] 설립시기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17	100.0	13	100.0	4	100.0
1998-2000년	2	11.8	1	7.7	1	25.0
2001-2005년	7	41.2	6	46.2	1	25.0
2006-2010년	1	5.9	0	0.0	1	25.0
2011-2015년	4	23.5	3	23.1	1	25.0
2016-2020년	1	5.9	1	7.7	0	0.0
2021-2022년	2	11.8	2	15.4	0	0.0

5) 제2장에서는 성폭력 보호시설 5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2021년 7월에 1개의 시설이 내부적인 사정으로 폐소되어 4개가 운영 중임.

- 예산 지원 구조를 살펴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를 매칭하여 지원받고 있는 구조가 일반적임. 국비, 도비, 시군비의 지원 비율은 다소 상이하나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의 구조가 전체 17개의 보호시설 가운데 11개(64.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2개의 시설은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시설로 현재 시군비 100%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음.

[표 3-4] 예산지원구조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17	100.0	13	100.0	4	100.0
국비 0%, 도비 0%, 시군비 100%	2	11.8	2	15.4	0	0.0
국비 55%, 도비17%, 시군비 28%	1	5.9	0	0.0	1	25.0
국비 58%, 도비 12.3%, 시군비 29.7%	1	5.9	1	7.7	0	0.0
국비 64%, 도비 16%, 시군비 20%	1	5.9	1	7.7	0	0.0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11	64.7	8	61.5	3	75.0
국비 76.1%, 도비 6%, 시군비 17.9 %	1	5.9	1	7.7	0	0.0

- 시설 면적의 경우도 20평대부터 200평대까지 다양하며, 시설의 유형, 정원 규모, 운영 주체 및 운영비 지원 상황 등에 따라 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상이하다고 할 수 있음.

[표 3-5] 시설면적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17	100.0	13	100.0	4	100.0
20평대	2	11.8	1	7.7	1	25.0
30평대	4	23.5	4	30.8	0	0.0
40평대	6	35.3	6	46.2	0	0.0
50평대	2	11.8	1	7.7	1	25.0
60평대	1	5.9	0	0.0	1	25.0
180평대	1	5.9	0	0.0	1	25.0
200평대	1	5.9	1	7.7	0	0.0

주. 20평대인 경우, 1개의 시설은 활용할 수 있는 그 외 공간(11.8평)이 있음.

- 시설마다 면적도 다르고, 방이나 거실 의 수 등도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배분하는 방식도 다르게 나타났음. 일반적으로 방이 3개인 경우, 적어도 1개의 방은 종사자들의 업무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나머지 2개의 방이 입소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이 됨. 방이 4개 이상인 경우 사무실로 1개, 상담실이나 숙직실로 1개를

사용하는 등 사무 및 종사자를 위한 공간을 좀 더 배분하기도 하는데, 입소자의 수나 가족 상황에 따라 상담실이나 숙직실로 사용하던 방을 입소자용 방으로 재배정하기도 함.

[표 3-6] 시설 세부 구조1: 침실/방, 거실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침실 수	합계	17	100.0	13	100.0	4	100.0
	2개	2	11.8	1	7.7	1	25.0
	3개	6	35.3	6	46.2	0	0.0
	4개	5	29.4	3	23.1	2	50.0
	5개	1	5.9	1	7.7	0	0.0
	8개	2	11.8	1	7.7	1	25.0
	9개	1	5.9	1	7.7	0	0.0
거실 수	합계	17	100.0	13	100.0	4	100.0
	0개	1	5.9	0	0.0	1	25.0
	1개	13	76.5	10	76.9	3	75.0
	2개	2	11.8	2	15.4	0	0.0
	3개	1	5.9	1	7.7	0	0.0

- 사무실/상담실/숙직실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시설은 7개였으며, 겸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8개였음. 식당과 조리실을 분리된 공간으로 갖추고 있는 곳은 6개였고, 겸용하고 있는 곳은 11개였음. 시설의 많은 경우가 일반 주택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욕실과 화장실은 겸용이고, 세탁실은 분리되어 있는 구조인 경우가 많음. 세탁실/욕실/화장실을 분리하여 사용한다는 경우는 11개였고,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6개였음.

[표 3-7] 시설 세부 구조2: 사무실/상담실/숙직실, 식당/조리실, 욕실/세탁실/화장실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무실/상담실/숙직실 분리여부	합계	17	100.0	13	100.0	4	100.0
	분리	7	41.2	5	38.5	2	50.0
	겸용	8	47.1	6	46.2	2	50.0
	기타	2	11.8	2	15.4	0	0.0
식당 및 조리실 분리여부	합계	17	100.0	13	100.0	4	100.0
	분리	6	35.3	5	38.5	1	25.0
	겸용	11	64.7	8	61.5	3	75.0
	기타	0	0.0	0	0.0	0	0.0
목욕실/세탁장/화장실 분리여부	합계	17	100.0	13	100.0	4	100.0
	분리	11	64.7	9	69.2	2	50.0
	겸용	6	35.3	4	30.8	2	50.0
	기타	0	0.0	0	0.0	0	0.0

2) 입소자 현황

- 시설의 입소자 규모는 10명에서 30명까지 다양했으나 정원이 10명인 시설이 9개로 절반 이상이었음(52.9%).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경우가 정원이 15명인 시설로 4개였음. 가정폭력 보호시설과 성폭력 보호시설 모두 ‘10명’ 이 정원인 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

[표 3-8] 시설 입소자 정원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17	100.0	13	100.0	4	100.0
10명	9	52.9	6	46.2	3	75.0
12명	2	11.8	2	15.4	0	0.0
15명	4	23.5	4	30.8	0	0.0
20명	1	5.9	0	0.0	1	25.0
30명	1	5.9	1	7.7	0	0.0

- 시설의 입소자 정원과 현원은 차이가 있는데, 2023년 4월 기준, 현재 입소자가 8명인 시설(4개)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입소자가 7명(3개)인 시설이었음.

[표 3-9] 시설 입소자 현원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17	100.0	13	100.0	4	100.0
3명	2	11.8	0	0.0	2	50.0
4명	2	11.8	2	15.4	0	0.0
5명	1	5.9	1	7.7	0	0.0
6명	2	11.8	2	15.4	0	0.0
7명	3	17.6	2	15.4	1	25.0
8명	4	23.5	4	30.8	0	0.0
9명	2	11.8	1	7.7	1	25.0
20명	1	5.9	1	7.7	0	0.0

- 입소자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40% 이하인 시설이 6개, 41%~70% 이하인 시설이 8개, 71% 이상인 시설은 3개였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가 41%~70%인 경우가 6개의 시설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보호시설의 경우는 40% 이하인 시설과 41%~70% 이하인 시설이 각각 50%을 차지했음.

[표 3-10] 정원 대비 현원 비율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17	100.0	13	100.0	4	100.0
40% 이하	6	35.3	4	30.8	2	50.0
41%~70% 이하	8	47.1	6	46.2	2	50.0
71% 이상	3	17.6	3	23.1	0	0.0

3) 종사자 인력 현황

- 시설의 종사자 인력 규모는 시설 입소자 정원과 연동되는데, 관련법에서 입소자 정원 규모에 따라서 종사자 인력 규모를 설정해놓고 있기 때문임. 조사 결과, 5명 규모의 종사자가 있는 시설이 7개(4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6명 규모의 종사자가 있는 시설로 5개(29.4%)였음.

[표 3-11] 종사자 수(정원)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17	100.0	13	100.0	4	100.0
4명	2	11.8	2	15.4	0	0.0
5명	7	41.2	4	30.8	3	75.0
6명	5	29.4	5	38.5	0	0.0
7명	1	5.9	1	7.7	0	0.0
8명	1	5.9	0	0.0	1	25.0
11명	1	5.9	1	7.7	0	0.0

주. 종사자 규모는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 총수임.

- 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경력을 보면, 일반적으로 ‘시설장’의 경력과 ‘시설장 제외한 종사자’의 경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2023년 4월 기준, 17개의 보호시설의 종사자 총 정원은 99명이나 현재 3명이 공석인 상황이었음. 공석을 제외하고 현직에 있는 종사자 96

명의 ‘평균 경력’ 을 살펴보면, 41.36개월(3.45년)이었음. ‘시설장’ 평균 경력은 97.06개월(8.09년)이었고, ‘종사자(시설장 제외)’ 평균 경력은 30.22개월(2.52년)이었음.

- 시설 유형별 종사자의 평균 경력을 살펴보면, 성폭력 보호시설 종사자 전체의 평균 경력은 71.35개월(5.95년)이었고, 가정폭력 보호시설 종사자 전체의 평균 경력은 31.92개월(2.66년)이었음.

[표 3-12] 종사자 평균 경력

(단위: 개월, 명)

구분	전체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평균경력	인원 수	평균 경력	인원 수	평균경력	인원 수
전체	41.36	96	31.92	73	71.35	23
시설장	97.06	16	73.25	12	168.50	4
종사자(시설장 제외)	30.22	80	23.79	61	50.89	19

주1. 결측값은 제외하고 분석.

주2. 17개 기관의 종사자 총 인원(정원)은 99명이나 현재 3명(시설장 1명, 시설장 이외 종사자 2명)이 공석임.

주3. 시설장 평균 경력은 16개 시설 기준, 종사자(시설장 제외) 평균 경력은 17개 시설 기준

4) 시설 환경 전반에 대한 평가

- 시설의 지리적 환경, 시설의 노후도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정도를 4개의 문항으로 ‘5점 척도’ 로 질문하였음. ‘지리접근성 낮음’, ‘시설노후 정도 높음’, ‘안전 및 재난대비 정도 낮음’, ‘시설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그렇다’ 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시설별 여건에 대한 각 기관의 평균은 다소 차이가 있었음. 4개의 문항에 대한 시설별 평균이 가장 높은 경우는 3.75점이었고, 4개의 기관의 평균이 3점 이상이었음.
- 문항별 평균의 경우, ‘접근성이 낮다’ 에 대해서는 평균 1.94점이었음. ‘시설 노후 정도가 높다’ 에 대해서는 평균 2.35점이었음. ‘안전 및 재난 대비 정도가 낮다’ 에 대해서는 평균 1.59점으로 4개의 문항 가운데 평균이 가장 낮음. 상대적으로 안전 및 재난 대비 정도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음.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하다’ 에 대해서는 평균이 2.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 환경 전반에서 ‘공간 부족’ 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음.

[표 3-13] 시설 환경에 대한 평가(평균)

(단위: 점)

구분	전체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전체 평균	2.19	2.19	2.19
지리적 접근성 낮음	1.94	1.92	2.00
시설 노후정도 높음	2.35	2.23	2.75
안전 및 재난대비 정도 낮음	1.59	1.54	1.75
시설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2.88	3.08	2.25

주. 점수가 높을수록 '그렇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런 편이다=5)

5) 시설 운영 전반

가) 시설 운영 지침: 시설 운영 지침, 입소자 생활지침 등

- 17개 보호시설 모두 시설의 운영 관련 지침을 가지고 있었음. 운영 관련 지침의 세부적인 구성이나 내용은 상이할 수 있지만, 지침의 주요 내용은 시설운영 위원회/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종사자 관련 규정(업무 분담, 복무 규정, 종사자 보수 지급 규정 등), 재무·회계 관련 규정, 입소자 관련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14] 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설 운영 위원회	- 위원 구성, 위원회 역할, 회의 운영 관리 등
인사위원회	- 종사자 채용 및 징계 등
종사자 관련 규정	- 채용, 휴직, 교육 등 - 업무 분장, 복무, 보수지급 규정 등 - 인권보호, 생활관리, 안전관리 등
입소자 관련 규정	- 인권보호, 생활관리, 안전 관리, 생활규칙 등
재무·회계 규정	- 예산 및 후원금 관리, 회계감사, 결산보고 등
개인정보보호	- 입소자와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시설 안전 관련 규정	- 위생, 시설물 안전, 소방안전, 재난 관리 등

- 입소자 대상 관련 지침의 경우는 생활지침의 형태로 입소자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음. 식사 및 청소, 외출 및 취침, 프로그램 참여, 동반 자녀 관리, 시설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엄수 등이었고, 새로운 사람이 입소하게 되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서약서를 받기도 했음.

[표 3-15] 입소자 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일생 생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 및 청소 당번 준수 - 식사 시간 및 장소, 식사 예절, 식사 후 뒷정리 등 - 핸드폰 사용 및 관리 - 위생 관리, 개인 소지품 관리 등 - 폭력, 폭언 금지 등 - 가해자, 가족 및 지인과의 연락 규제 - 동반 자녀는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
외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 시 장부에 기록 및 보고, 귀가 시간 준수 등 - 외박 금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관련 정보 비밀 엄수 - 개인 소지품 관리 및 책임소재 - 시설 내 금연, 금주 등

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심리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보호시설에서의 숙식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는 자신의 시설 내의 자원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하면서 입소자를 지원하고 있었음.
- 지역의 상담소, 의료기관, 청소년/아동/한부모 및 기타 다른 복지시설, 법률구조기관, 경찰, 해당 지자체 및 행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지원센터,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됨. 다만 시설의 설립시기, 지역의 가용자원 등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6) 시설 관련 주요 이슈⁶⁾

가) 1인 1실 등 개인의 독립된 공간의 필요성

- 많은 시설에서 평균적으로 1개의 방(침실)에 2~4명이 생활하고 있음. 입소자 수 등 입소자 상황에 따라 1개의 방(침실)에 생활하는 인원이 변화되기도 하는데, 입소자 1인이 1개의 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음. 개인의 사생활이 중요시 되고, 개개인의 생활방식 전반이 변화하면서 1인 1실에 대한 요구나 문의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개인의 사적 공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코로나 시기에 감염자를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시설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더 제한적이었음.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공간, 식사준비 등으로 입소자들의 생활, 시설 운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음.

나) 일반보호시설에 장애인 입소 증가

- 장애인 입소자의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장애인과는 다른 방식의 지원이나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금전 관리, 음식 준비, 위생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들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상생활에 대한 기본 교육부터 시작하게 됨. 장애인 교육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등 비장애인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이외에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지원을 병행해야하는 경우가 많음.
- 장애인 보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입소할 경우 종사자들에게도 많은 부담과 고민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임. 장애인 지원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타 기관에 연계도 쉽지 않음.

6) 시설 관련 주요 이슈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이슈, 제2장에서 제시한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자 현황 및 특성에서 드러난 주요 이슈로 기관현황조사 질문지 구성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하였음. 시설 관련 주요 이슈 중 일부는 이후의 면접조사 분석에서도 다루어질 예정으로 이 장에서는 현황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함.

다) 반려동물 동반 입소에 대한 문의 증가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보호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반려동물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음. 시설에 반려동물 입소 여부를 문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음.
- 반려동물 동반 입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고, 현재의 시설 환경에서 반려동물의 동반 입소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임. 소음발생, 동물에 대한 선호도 차이, 알레르기 등으로 동물과 함께 거주하게 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음. 더구나 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이며, 현재 입소자들이 생활하기에도 물리적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반려동물 동반 입소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라) 공개 여부에 따른 보호시설의 다양화에 대한 의견

- 현재 우리사회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비공개 시설로 운영 중임. 보호시설의 입소자들도 보호시설의 위치 정보 등에 대해서 일체 비밀을 엄수해야하고, 생활 시에도 시설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함.
- 네덜란드의 경우, 일명 ‘오렌지하우스’ 로 불리는 공개형 보호시설이 운영 중으로 보안 등급을 구분하여 공개형과 비공개형 등으로 시설 유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음(유화정 외, 2019). 그러나 한국의 경우 보호시설을 개방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음. 출입이 자유로운 개방적 시설의 경우 입소자들도 불안해할 수 있고, 아직까지 한국의 정서나 상황에서는 공개형 보호시설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었음.
- 한편으로 소수이지만, 보호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입소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경제활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개 여부 및 정도 등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음.

2. 관계자 면접조사

가. 조사 개요

-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함. 이용자의 경우 시설의 종사자를 통해서 소개받았고, 기관 현황 조사 관련해서 각 기관에 안내 및 협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면접조사 대상도 섭외하였음.
- 확정된 면접참여자들에게 연구의 개요 및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질문지를 이메일로 미리 발송함. 주요 면접 조사 내용은 대상에 따라 다소 상이했는데, 종사자의 경우, 최근 입소자 현황 및 특성, 시설 운영 규칙, 시설 운영 시 어려운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이었음. 이용자(입소자)의 경우는 입소 경로, 시설 생활 적응과정, 시설에서 제공받은 지원, 퇴소 이후 계획 등이었음.

[표 3-16] 주요 조사 내용

면접대상	조사내용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이용자 입소 현황, 입소자 특성 및 변화 경향 - 시설에 대한 입소자 만족여부 - 시설 운영 시 중요한 점 및 환경 개선 측면에서의 우선 개선사항 - 폭력 유형별 보호시설 차별화에 대한 종사자 의견 - 장애인 입소 시 대응방안 - 1인 생활시설 필요성에 대한 종사자 의견 - 이용자들 식사이용 방식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 경로 - 입소 경험 및 생활일과 등 - 시설에서 지원을 제공받은 경험(프로그램 및 기타 지원 등) - 지원 시설의 기능 및 역할, 개선점 등 이용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 - 필요한 지원 및 제도에 대한 이용자 의견 - 1인 생활시설 필요성에 대한 이용자 의견 - 기타 시설 관련 의견 등

- 면접조사는 4월 2주에서 5월 2주 중에 진행되었고, 면접조사는 이용자는 주로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했고, 종사자의 경우 2인을 함께 진행한 경우도 있었음. 시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대면조사와 비대면(Zoom 이용)조사를 병행하였고, 면접의 소요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음.
- 면접 시작 전에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연구자가 간략하게 설명한 후, 면접 내용이 이후 보고서 등에 일부 인용될 수 있다는 점, 개인의 인적사항 등은 익명처리하고 개인이나 기관 등 특정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공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점을 자세히

안내함. 녹음에 대해 동의를 받은 후 녹음과 함께 면접조사를 시작하였고, 녹음 파일은 그대로 전사하여 문서자료화한 후 분석함.

나. 면접조사 참여자⁷⁾

- 면접조사 참여자 가운데 종사자는 현재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로 총 6명이었음. 가정폭력 보호시설 종사자 3명, 성폭력 보호시설 종사자 3명이었으며, 이들의 직위는 소장(시설장), 팀장, 사무국장, 일반 상담원 등 다양했음. 경력의 경우도 5년부터 17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음.

[표 3-17] 면접 참여자(종사자)

사례	지위	관련 경력		기타
		현 기관 경력	유사기관 경력	
A	상담원	17년	-	개별면접
B	실장	7년 8개월	4년	집단면접
C	팀장	5년 8개월	5년 3개월	
D	사무국장	9년	-	집단면접
E	상담원	5년	2년	
F	소장	11년	-	개별면접

- 시설 이용자의 경우는 총 5명이었고, 모두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였음.⁸⁾ 면접 참여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이 단기보호시설이었기 때문에 입소기간이 최대 1년이므로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는 지난해나 올해 입소한 경우였음. 면접 참여자의 연령대는 30대 2명, 40대 2명, 60대 1명이었음. 자녀를 동반하여 입소한 경우가 3명이었고, 한 사례는 면접 시점에서 2주 후 다른 시설로 이동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였음.

[표 3-18] 면접 참여자(이용자)

사례	입소시기 (기간)	연령	자녀 동반 관련	기타
가	2022년 8월 (9개월)	30대	자녀가 있으나 비동반 입소	
나	2023년 1월 (3개월)	40대	자녀 동반 입소	다른 지원 시설로 이동 예정
다	2022년 8월 (9개월)	30대	자녀 동반 입소	
라	2022년 8월 (9개월)	60대	-	
마	2022년 6월 (9개월)	40대	자녀 동반 입소	현재 퇴소한 상태

7) 면접 참여자가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제시하고자 함.

8) 성폭력 보호시설 이용자를 섭외하기는 쉽지 않았음.

다. 면접조사 결과 분석

1) 보호시설 연계 및 입소과정

가)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의 상담소 등을 경유하여 입소

- 보호시설 입소는 대부분 경찰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등을 통해 이루어짐. 경찰에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상담소를 안내하여 긴급피난처(임시보호시설)에서 3~4일 동안 지내다가 단기보호시설로 입소하는 경우가 다수였음. 그리고 시설의 위치는 철저하게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입소자들도 자신들이 어떠한 지역에 있는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이동하게 되는 구조임.

추석 지나고 외식하고 나서 좀 작은 일로 폭언 폭행이 애들 앞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용기를 내서. 경찰분이 오시고 나서, 경찰분도 여쭙보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시잖아요. 근데 경찰분들께서도 생각하시기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366에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366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번호 자체를 몰랐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갈 곳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로 연결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로 가서 거기서 한 일주일 안 되게 머물렀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연결이 돼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여기 온 거죠. (사례 다)

저는 가정폭력이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거기서 이제 1366으로 연결해서 거기서 4일 있었어요. (중략)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이렇게 와서 임시 보호에서 하루 자고, 거기 가서 나흘 만에 여기로 오는데 이제 어디로 가는 줄도 몰랐죠. 뭐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됐다고 하는데 위치도 안 알려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원칙이 비공개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고,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 만나보니까 그게 좀 갑자기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례 라)

처음에는 1366에 전화를 했는데, 1366은 상담하시는 게 시간적으로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지역의) 상담소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상담 받고 여기 입소하게 됐어요. (사례 가)

- 경찰신고 이후 시설 입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3~4일부터 늦어도 7일 정도로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처리 절차가 완료되어 시설 입소가 이루어지게 됨. 보호시설 입소를 결정하면 입소 절차를 밟는 과정은 순차적으로 별 무리 없이 진행되는데, 문제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폭력 상황을 벗어나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음.

처음 보고 있다가 계속 가격을 한 번 하고 또 하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달려오면서 말리긴 했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도 못 말려요. 왜냐하면 어머니한테도 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기분 조절이 안 되면 다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피하는 게 답이에요. 이 사람이 한 번 눈이 돌아가면 살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사렸어요. 내가 더 말 한 마디 더 하면 이 사람 정말 날 죽여버리겠구나. 항상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는 말도 했고. 그러니까 좀 많이 사렸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의견에 좀 맞대응하면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놀렸죠. 화를 눌렀어요.(중략) 못 참고 그냥 그때는 도저히 못 살겠구나. 이렇게 애들도 맨날 상처받고 방임적이어서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현실이. 고립돼 있었고.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려고는. 그래서 그때 딱 판단을 했어요. 도저히 우리는 같이 못 살겠구나. 그래서 그냥 그때는 신고가 되더라고요. 계속 참다가 신고할까 말까 하다가 신고가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뛰쳐나갈 줄 몰랐어요. 내가 맨날 소극적이었는데. 저도 그렇게 보면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결심을 했는지. 그러니까 애들 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례 다)

-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특정 상황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신고에 이른 경우는 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폭력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경찰 신고나 폭력 상황을 벗어날 결심을 하기 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나) 입소 결정을 어렵게 하는 보호시설 환경: 사적 공간 부재, 자유의 일정한 제약, 자녀 및 반려동물 돌봄 문제 등

- 보호시설의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가 보호시설 종사자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생활 환경 및 주의 사항 등을 문의하기도 함. 그러나 통화과정에서 다인 1실, 핸드폰 사용 제한, 기타 시설생활 시 지침 등을 안내 받으면 입소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해야하거나 핸드폰 사용, 외출 등의 일정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 단번에 입소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사회전반적으로 개인의 주거환경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나 가족별로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다가 낯선 사람과 주거 공간 전반을 공유해야하는 시설 생활을 선택하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을 수 있음. 특히 폭력 피해를 경험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예민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나 낯선 공간에 적응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 있음.

실제 입소하는 사람들하고 진짜 상담하죠. 전화 상담을 하고, 전화 상담 하자마자 곧장 입소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해도 머뭇거리는 경우가, 여기 있는 환경을 얘기해 주면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상태에서 끊어져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보면 옛날에는 단독주택 살던 사람들 좀 치안 좀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문의를 해왔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임대주택도 개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마련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소인들이 개인 화장실 혼자 방을 쓸 수 있는지 핸드폰 사용 같은 거, 규칙 같은 걸 많이 물어오죠. 근데 주거 환경에서 제일 먼저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게 피해를 당해서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낯선 사람들하고 한 방을 쓰라 그러니까 대부분 머뭇거리죠. (사례 F)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동반 가능 여부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됨. 특히 ‘10세 이상의 남자’ 자녀는 시설에 동반 입소가 불가능한데, 동반 입소가 어려운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혼자 입소를 결정하기 쉽지 않음. 10세 이상의 남자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보호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여성가족부, 2023: 313), 가족보호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보호시설을 찾아서 입소하기는 쉽지 않음.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제약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입소한 경우,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빠르게 퇴소를 결정하기도 함.

남자 아이 10세 이상은 같이 못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분도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폭력을 많이 당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아이를 못 데리고 오신 거죠. 남자아이 10살 이상이라서. 근데 그 부모는 자식을 떼어놓고 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여기 들어와서 남의 아이들을 보면 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기 생각나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솔직히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 상황이 똑같이 반복될 텐데. (사례 다)

- 최근 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과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시설 입소 관련해서도 반려동물의 동반 가능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함. 시설에 문의할 때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을 돌봄센터에 위탁한 후 입소하는 경우도 있음.

한 2년 전에 반려동물 때문에 집에 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는 반려동물을 따로 케어 해 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 동물 단체 어디다가 얘기를 하니깐 거기서 그는 데리고 있다가 빨리 안 찾아가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그러고 하니깐 거기다가 그런 의미로 말걸 수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나 만들었잖아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단기 쉼터에 있는 동안은 반려동물을 보호해 주는 곳이. 그런데 그 이후로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연계한 적은 없어요. (사례 C)

- 특히 시설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수면을 취하는 공간인 방(침실)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으로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입소 결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보호시설 입소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돌봄의 문제가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⁹⁾ 반려동물 동반 입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돌보아주는 서비스를 연계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2) 보호시설의 환경과 시설생활에 적응

가) 시설생활의 규칙들을 학습하고 실천

- 새로운 입소자가 입소하게 되면 시설생활의 규칙들을 안내받고 이를 숙지하게 됨. 시설의 입소 시기, 자녀 동반 여부, 연령대 등을 고려해 개인 혹은 가족이 생활하게 될 방 배정이 이루어지고, 거실, 주방, 욕실 등은 공유하면서 생활하게 됨. 배정된 방에서 수면이나 휴식 등 일상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1개의 방에 2~4명이 생활하게 되므로 이러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함. 좀 더 많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생활 습관을 익혀야 하는데, 동반 자녀가 있는 경우 동반자녀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설 생활 적응 시 더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됨. 그리고 방 배정이나 일상적인 생활규칙 등은 입소자 상황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입소자들끼리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생활규칙들을 조율하기도 함.

9) 경기도 보도자료(2020.2.12.). “가정폭력 피해가정 반려동물, 경기도가 안전하게 대신 돌봐드립니다”
(gnews.gg.go.kr/news/gongbo_view.do?number=43308&s_code=S017&b_code=BO01&lastidx=10&type_m=sub)(최종검색일 : 2023.5.30.)

오시는 순서대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사시다가도 이제 안 맞거나 서로 좀 갈등이 있거나 이러시면, 아이가 이렇게 두세 명 계신 분들은 방을 주는데 아이가 하나인데 아이하고 엄마하고 조금 잘 지내고 있고 괜찮고 그럼 성인하고 같이 지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 분들은 이렇게 거꾸로 한 번씩 방을 회전을 시켜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꼭 처음에 와서 입소한 대로 해서 1년 동안 쪽 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퇴소하신 분들도 있고 방이 또 저기 네 분이 사시다가 두 분만 남아 계실 수도 있고 새로운 분이 또 들어올 수 있고, 그럼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적응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아이 하나 엄마 한 분 이렇게 계셔가지고 이 분이 이미 적응이 어느 정도 되신 상황이고 다 유대감이 생긴 상황이라면 성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놓고, 새로 오신 분은 차라리 새로운 공간에 가족끼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희가 상황을 봐서 회전을 하는 것 같아요. (사례 C)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방을 배치할 때 연령도 비슷하게 맞춰줘야 해요. 너무 젊은 세대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맞는데 비슷비슷하니까 또 맞았는지 아무튼 잘 맞았어요. (사례 라)

- 입소자들은 처음 입소 시 외출 제한, 핸드폰 사용 금지 등 이전에 누리던 자유가 일정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기존의 생활방식을 수정하면서 적응하게 됨.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외출이 제한되고, 핸드폰이나 pc 사용(이메일 등 개인 계정 로그인)도 금지됨.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핸드폰 사용이나 외출, 개인 카드 사용 등도 가능하며, 시설의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 용무를 처리하고 생활하는 방법을 찾아나가게 됨.

초기에는 좀 제지를 했죠. 왜냐하면 일주일간은 그래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일주일간은 여기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가벼운 산책이라던가, 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도서관을 간다든지 어디 뭐 필요할 때는 항상 그 명단표가 있어요. 거기다가 항상 어디를 가는지 다 체크하고 몇 시에 들어올 건지 그것까지 세세하게 다 적어서 그 시간 안까지는 약속을 지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례 다)

일단 일주일에는 외출을 못하게 하셨어요. 제 위치가 노출이 되면 안 된다는 일단 그런 이유고, 제 상황은 외출이 안 되는 상황이래요. 거기 입소의 기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아이랑 이제 거의 집에서만 생활을 했고. 근데 거기서의 규칙이 좀 생각 외로 많이 빡빡하더라고요. (사례 마)

외출은 외출 대장에 쓰고, 어디 가는지 쓰고 그러고 나가시고 갔다 와서 들어온 시간을 쓰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외박이 아니고서야 어디 가해서 만나는 거 경찰서 가는 거 다 동행을 하니까, 그 외적인 건 산책하고 그런 걸 위주로 하시니까요. 큰일이 있으면 보고를 하게 하는데 그 외에는 다 외출 대장에 쓰고 자유롭게 나갔다 오실 수 있도록 해요. (사례 C)

- 특히 핸드폰 사용의 제한은 입소자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늘 사용하던 핸드폰을 갑자기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함. 요즘은 핸드폰이 전화, 메시지 등 타인과의 소통기능뿐 아니라 정보를 검색하고 영상 등을 시청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핸드폰 사용이 제한될 경우 일상생활 전반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고 할 수 있음.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실무자들도 규칙이 있어야만 다 이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이해는 하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억압되는 게 너무 많아서. 휴대폰 사용 못해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로그인 자체도 안 되고, 또 카드도 안 돼요. 체크카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현금으로만 결제를 해야 돼서 제한적인 게 많아요. 요즘에 다 카드로 결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솔직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중략) 핸드폰도 솔직히 다른 명의로 쓸 수는 있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세 달 동안 핸드폰이 없었어요. 다행히 선생님들이 선불폰 해주셔가지고 충전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사례 다)

지금 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처음엔 불편하지만 지금 한 세 네 달 되니까 좀 적응도 되고, 이제 제가 있는 곳이 비공개 쉼터이고 또 요새는 그런 전화 이런 걸로도 위치 파악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저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 처음 입소했을 때 그 문제가 좀 힘들었죠. 요즘은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것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왔다가 가신 분들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사례 나)

멀리서 오셔서 남편이 거의 멀리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거나, 내담자가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남편이 그렇게 집요할 정도로 에너지가 없다고 저희가 현장에서 느낀다거나 그러는 분들은. 처음부터 무조건 휴대폰을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되도록이면 유심칩을 빼고 그냥 좀 동영상만 볼 수 있게 했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사실 유심칩을 뺐는데 요즘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끄지 않는 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뺄 수도 없고 그래서 답답해하시고 이러니까 정 안 되면 저희 기관에 공폰 있으면 공폰으로 드리고 이러기는 한데, 되도록 처음에 와서는 한 2주나 한 달 정도는 조금 양해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나중에 이제 번호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휴대폰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조금 이렇게 기다려 달라든가 아니면 조금 휴식 갖고 있다가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아예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건 어렵고 그리고 통화나 그런 것들은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중략) 저희가 강제적으로 ‘휴대폰을 끄세요.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것보다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힘들 것 같으면 본인 스스로 휴대폰을 제한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끄고 말기거나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해서 조금 계실 수 있도록 했지, 저희가 마음대로 휴대폰 사용이 안 됩니다 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이분들한테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는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사례 C)

- 입소자들은 생활하면서 핸드폰 없는 생활에 적응하게 되거나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자신이나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핸드폰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 등 시설의 생활규칙을 준수하면서 적응해나감. 그리고 시설 운영자 측면에서도 일정 기간만 핸드폰 사용이나 외출 등을 제한하는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핸드폰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생활규칙 전반에서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면서 과거에 비해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었음.

나) 피해 회복의 시간들: 치료회복프로그램 참여

- 처음 입소 한 후 일주일 정도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도록 하지만, 일주일 이후부터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들을 갖게 됨.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상담 등 시설에서 다양한 피해회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입소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되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왔잖아요. 너무 낯선 공간에 왔어요. 애들이랑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심리 쪽으로도 치유 회복 프로그램 같은 걸 안 해주셨으면 아마 못 견디고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례 다)

처음에 입소했을 때는 아직 마음이 막 진정이 안돼 가지고 잠만 잤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은.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사례 가)

- 자녀를 동반한 경우, 자녀들도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함. 또한 자녀의 양육자이기도 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부모교육)을 제공하기도 함. 시설 내에서의 제공하는 교육이나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회복하고 이후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개인적 힘을 키워주기도 함.

애들도 아무래도 상처가 많다보니까 많이 힘들어했어요. 첫째 같은 경우는 이미 노출이 많이 된 상태여가지고 제가 잠깐이라도 없으면 울부짖고 울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좀 심했어요. 근데 이제 미술 치료를 통해가지고 애가 많이 표출이 되잖아요. 자기 억눌렀던 감정이 이제 그림으로 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없더라도 이해시켜주면 기다릴 줄도 알고 많이 좋아졌어요. 애들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례 다)

최근에 계셨던 분들은 주거랑 법적 지원 때문에 끝까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있으면 뭔가 해결은 될 것 같다는, 끝이 보이는 거죠. 그런 것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과 여기서 듣고 했던 의식 향상이 지나고 보니 그게 자기한테 엄청 도움이 많이 됐다, 왜냐하면 이게 폭력인가, 내가 괜히 그런 건가, 친정에서조차 도움 못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교육받고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서로 하면서 내가 맞고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사례 B)

-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 생활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절제력을 더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르지만, 때로는 타인과의 공동생활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함.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안 좋은 기억을 더 많이 떠올릴 수 있고 무기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의식해야하는 환경이 한편으로는 안 좋은 기억을 잊고, 피해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저는 그런데도 마침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가지고 셋이 자는데 불편한 게 없어. 오히려 나는 혼자 있으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른데, 내 성향 같은 경우는 혼자 있으면 더 우울증이 더 안 좋았을 것 같아 그런데 마음에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위위가 되고 그 셋이 자면 딱 맞는데, 그런데도 괜찮아요. 셋이 쓰는 것도 서로 이제 양보해가면서 쓰긴 하는데. 또 그러면서 배우잖아요. 양보도 배우고 질서도 배우고 하는데 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 라)

근래에 들어오신 분들도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오셨고, 진짜 여기 안 왔으면, 그러니까 경찰이 여기 안 데려다줬으면 자기는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의외로 아직도 심터라는 것을 모르는 피해자들은 엄청 많다, 본인 스스로 뭔가 주거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사례 B)

- 시설에서의 생활은 자유의 일정한 제약, 낯선 사람들과의 공동생활 등 어려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설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 반복되는 폭력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기도 함. 그럼에도 여전히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물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을 수 있음. 시설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시설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관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다) 입소자 특성에 따라 조율이 필요한 생활 규칙들

- 시설 생활에서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문제뿐 아니라 가장 주요하게 대두되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입소자들의 식사 해결 방법에 대한 것임. 일부시설에서는 식사 준비를 전담하는 종사자(취사조리원)가 있어서 입소자나 종사자가 식사 준비로부터 자유로우나,¹⁰⁾ 많은 시설에서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식사 당번을 정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음.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가 교대로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 아침과 저녁은 입소자가 준비하고 점심은 종사자가 준비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입소자들이 그날의 밥이나 김치 정도만 준비해두고 나머지는 각자 개인(입소자)가 준비해서 개별적으로 식사하는 경우 등 역할 분담이나 참여방식은 다양했음.

여기 이제 모든 만들 재료는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식단을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을 잡아주시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당번이 있어요. 당번이 있는데 이제 그날의 청소라든지 밥 김치 이런 거는 이제 그분이 하시는 거고. 이제 하루하루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 각자 또 식습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알아서 이제 만들어지고, 냉장고에 이제 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자 만든 음식을 이제 칸에다가 보관을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사례 나)

당번이라기보다는 그냥 거의 평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해 주시려고 하시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소자들이 돌아가면서. (사례 가)

식사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밥을 해요. 밥을 하고 그래서 그것도 딱 정해놓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식재료 같은 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가 뭐를 만들겠다 세 가지 재료를 만들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를 장을 다 봐주셔서 가지고 사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그 하루에 오늘 식사 당번이면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해서 다 메뉴 만들어 놓고, 근데 처음에는 다 그랬어요. 삼시 세끼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솔직히 시간을 다 뺏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해도 못 받으러 가요. 왜냐면 점심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좀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점심은 이제 실무자 선생님들이 하고, 해 주시고. 아침 저녁은 저희가 이제 책임지고 하는 걸로 하고. 평일에는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이제 삼시 세끼는 저희가 하는거죠. (사례 다)

10) 취사 전담 종사자가 있는 경우, 입소자들의 식사 준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함. 그러나 취사조리원의 경우도 상담원 자격을 갖추어야하고, 상담원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취사 업무만을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시설 운영 측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함. 또한 입소자들이 취사조리원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종사자와 입소자가 함께 식사를 준비하지 않고, 취사전담 종사자가 아닌 종사자가 전적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청소년이나 장애인 입소자가 있는 경우 이들이 식사당번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아침에 학교를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깨워서 애들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제한을 두지는 않아요. 식사를 선생님들이 준비해 놓지만 굳이 일어나라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저기 해놓은 거 찾아서 먹고 그런 식으로 하고. (중략) 그리고 하단 내에서 주방에서 음식물을 해먹는다면 세탁물을 언제 쓴다든가 그런 것은 자유롭게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 같은 것들은 음식 재료들은 써놓기만 하면, 냉장고 앞에 써놓기만 하면 물품 구입 선생님들이 물품을 구입해 놓고. (사례 F)

식사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애 어머니니까 이제 계속 애들을 챙기고 이래서 계속 만들어 왔던 사람이지만, 이제 직장인 쉼터 입소자들은 다 직장에서 돈만 벌고, 먹는 거는 사 먹고 이러한 분들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예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이제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먹어야 되니까. (사례 나)

- 자녀를 동반한 입소자들의 경우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거나 자녀들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 동반 입소자들과 그렇지 않은 입소자들 사이에 갈등이 자주 발생하기도 함. 일반보호시설과 가족보호시설을 분리해두고 있으나 가족보호시설은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자녀를 동반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음. 자녀를 동반한 입소자들은 자녀들을 스스로 돌보아야하는 부담도 적지 않은데, 시설 내에서 자녀들을 위한 물품도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장난감으로 싸움이 시작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 물품 등도 보완될 필요가 있음.

이렇게 각자 방을 두셔도 솔직히 이제 같이 잘 지내기 위해서 모두 다 참고 있는 거죠. 솔직히 부딪히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싸우게 되면. 장난감은 솔직히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난감 아니잖아요.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쓰는 물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싸움이 엄청 많아요. 남자애들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엄마도 우리 아이들에게 안 줘도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례 다)

- 시설 내 식사 당번은 입소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는 요소였음. 청소년이나 장애인의 경우 식사당번을 수행하기 쉽지 않아 종사자들이 식사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비장애

인의 경우도 음식 준비를 스스로 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 식사 당번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시설에서는 입소자의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설 내의 생활규칙들을 일부 수정하면서 운영하고 있었음.

3) 감소하는 입소자와 입소자의 다양화

가) 일반시설이지만 장애인의 입소 비율이 증가

- 보호시설의 경우 일반보호시설과 장애인보호시설을 구분하고 있지만, 장애인 보호시설이 매우 적기 때문에 장애인 보호시설을 찾아서 입소하기에는 더 어려움이 있음. 특히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이 이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구조 자체가 설계되어 있지 않아서 신체 장애인이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임.
- 시설 생활에서 지켜야할 규칙에 대한 부담, 자유가 일정하게 제한된 생활, 개인 공간의 부재 등으로 시설 입소를 망설이게 되는 측면이 있고, 한편에서는 주거지원사업이 다양해지면서 공동생활을 해야하는 보호시설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선호하게 됨.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쉽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독립된 주거시설보다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생활을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어서 최근 보호시설에 장애인의 입소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도 있음.

2010년 이후부터 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주거 지원 사업이 생기면서 확실히 그 타격이 좀 있더라고요. (중략) 지금 현재도 거의 지적 장애인인 분들이고요. 비장애인들은 주거 지원 사업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폭력 피해 신고나 접수가 돼서 사건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주거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을 단기간은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웬만한 비장애인 분들은 그렇게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있고 싶어 하시지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시는 곳은 안 오시려고, 반면 장애인들은 이제 혼자 생활이 안 되시니까. 이제 이런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이라도 오시려고 하시는 거지. (사례 A)

- 또한 장애인이 입소할 경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지원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져야하는데, 현재 일반보호시설의 인력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도나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장애인을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일부시설에서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인 지원 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 학교, 장애인 지원 시설에 연락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폭력 피해 관련 지원 이외에 일상생활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기초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었음.

있기로 하셨는데 막상 하루 이들 생활을 해보시면 불편하신 거예요. 방에 턱도 있고 어쨌든 휠체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신체가 불편하신 분이더라도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장애인 센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도 이제 부탁하기가 힘들고. 사실 저희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 건지 또 미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본인들이 불편하셔서 그냥 하루 이들 지내시다가 나가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중략) 우선 장애인이라고 하면 학생 같은 경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 그다음에 일반 학교더라도 특수반, 도움반이라고 하죠. 그런데 연결을 빨리 해서. 우선 미성년자면 그렇게 교육의 지원을 받고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시면 장애인 훈련 발달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거기를 가서 어떤 기능이 강점이고 어떤 기능이 약한지를 파악하고,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좀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는 자격증들을 따게 하고 취업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훈련센터를 졸업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요즘에는 특수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한글도 다 깨우치고 숫자도 다 아는데,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면서 이제 일상생활에 관련된 훈련들을 하도록 해요.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은 따로 그렇게 낮에는 거기서 훈련을 받고, 저녁에는 여기가 집인 것처럼 와가지고 저희들이 또 하는 폭력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하고. (사례 A)

- 장애인이 입소할 경우 장애인의 가족까지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장애인 가족 가운데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성적인) 폭력의 피해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 오랜 시간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어온 경우도 있어서 장애인의 경우 법률지원, 의료지원도 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되기도 함.

저희도 좀 당황스러웠죠.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장애가 아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의 성폭력 피해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다 이분들의 가족까지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족들이 일반인 분들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중략) 그리고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노출되다 보니까 성폭력만 따로 딱 떼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저희가 지원하는 법률, 의료, 이런 게 다 지원하다 보면 어느 정도 본인이 자립을 할 상황이 됐는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사례 D)

- 또한 장애인이 입소할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해서 장애인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비장애인들의 경우도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생활하

면서 비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도 하는 등 서로 간에 좋은 상호작용이 발생하기도 함.

비장애인들과 장애인의 갈등도 많고요.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어도 3급과 2급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는 갈등들이 많아요. (사례 A)

장애인분들 입장에서 장애인끼리 같이 있는 것보다는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하는 게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비장애인들의) 인권의식도 높아지는 것 같은 게 옆에서 도와주고 얘기하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지적장애도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스스로 그런 데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장애가 심한 사람한테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장애인 시설에 가면 식사당번 전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저희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그 이후에는 그런 분들이 입소했었을 때 식사당번 때문에 내보내지 않고 본인도 식사 당번 때문에 나가지는 않았으니까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본인이 못하겠다고 나가시고 경우들이 있었으니까요. (사례 B)

- 장애의 정도나 유형,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개인의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반보호시설에 장애인 입소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시설의 안전과 평온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

- 최근에는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입소하면서 돌발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하는 입소자들도 있고, 본인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정신 질환이 있는 입소자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때 종사자나 다른 입소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

항상 긴장하면서 일을 하죠. 그런 정신증이 계신 분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저희를 긴장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정신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신경을 더 많이 몇 배로 쓰는 것 같아요. 약도 제때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일부러 물 떠다가 약 드시는 것까지 봐야 되고, 어쨌든 약은 꼭 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약을 안 먹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니까 약을 눈앞에서 드실 수 있도록 최대한, 그것도 약 드시는 것도 저희의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정신증에 대한 것에 대한 실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사례 C)

- 입소자 가운데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서 입소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주의를 요구되기도 함.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면서 시설의 존재가 주변에 알려질 수도 있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저희는 자살 시도 같은 경우 올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경찰, 소방서,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오는 사람만 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세대 주택에서 여기 다세대 들썩들썩하고 소방차 올려 경찰차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음도 층간 소음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이렇게 다세대에 있을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례 F)

-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입소자들이 증가하면서 종사자 입장에서는 지원의 범위나 내용이 더 다양해지고, 지원역량을 갖추기 위한 부담이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입소자가 감소하면서 시설 운영에 대한 압박도 증가했지만, 한편으로 입소자들의 상황과 특성은 더 다양해져서 입소자 관리의 난이도는 더 증가했다고 이야기함.

공간적인 부분도 참 크고 입소자분들이 정말 즐긴 했지만 난이도는 확 올라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되게 더 필요한 서비스가 다방면으로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사례 E)

4) 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제약과 보호시설 퇴소 이후의 삶을 준비

가) 지속되는 지원: 주거지원 및 타 시설로 연계

- 입소 가능기간이 지나서 현재의 시설에서 퇴소해야하는 입소자의 경우, 종사자들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됨. 청소년 입소자나 장애인 입소자의 경우, 입소가능 기간에 도달하더라도 심리적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이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기 때문임. 시설 퇴소자에게 제공되는 자립지원금(5백만 원)을 활용하여 퇴소 이후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거나 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인 지원시설로 연계하기도 함.

지금도 성인이 되면 퇴소를 해야 되는데 직업 훈련을 받거나 뭐 할 시간이 되게 짧고, 그리고 한번 직업 훈련받고 난 다음에 또 바꾸기도 하잖아요. 적성이 안 맞으면. 그것을 고려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중략) 작년까지 최소 자립 지원금이 500만 원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500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천만 원까지 줘요. 근데 천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500을 처음에 주고, 자립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또 500을 추가적으로 주는 식인데. 그 500은 보증금이고 월세를 얻어야 되니까 보증금으로 하고. 대학을 진학했을 경우에는 주민센터와 연결해서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받는다고 그런 지원. (사례 F)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서 운영하는 주거 지원 시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쪽으로도 저희 또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많이 가시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타 시설로 입소하시는 수치가 훨씬 많고, 자립은 힘드신 경우가 많아서. (사례 D)

저희는 주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시고 그리고 지금은 주거가 거의 다 찾아요. 자리가 없는데 최근에 자립하신 분은 가정폭력 피해자로 또 아까 주거 지원 LH 전세 임대나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외부로 집을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자립을 하셨거든요. 자립 지원비 저희가 있잖아요. 자립 지원비 500을 지원해 드려서 외부에 전세 임대할 때 계약금으로 넣을 수 있게 해서 밖에서 잘 자립해서 사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사례 C)

-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사업 가운데 주거취약계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별 소득 수준의 70% 이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한부모 가족, 범죄 피해자 등이 주요 자격 조건이 되고 있음. GH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 전세 임대, 기존주택 매입 임대, 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의 1순위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지난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임. 특히 최근에는 청년 대상 주거지원사업도 확대되고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주거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안내하는 것도 필요해보임.

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과 퇴소 이후의 삶 준비

- 반복되는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이유는 자녀와 경제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음.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독립이 어려운 경우,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 다른 방식의 삶을 기획하기가 쉽지 않음.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지만, 보호시설 퇴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

황임. 대부분의 입소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퇴소 이후의 거주지, 생계비에 대한 부분임. 때문에 많은 입소자들이 퇴소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직업 훈련에 참여하고 관련 자격증을 습득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음.

근데 처음에는 제가 여기 오면서 심리적으로도 되게 불안한 상태였는데, 또 이제 나중에 나가서 애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도 나를 돌보고 싶지만 여기 들어와서, 나를 치유, 여기 온 목적이 자립도 목적이지만 치유의 목적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치유라는 생각이 거의 머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 정도면 거의 자립 그거 '생계 유지 어디 어떻게 해야지?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때문에 되게 걱정이 너무 많이 됐어요. 아무 생각도 안 되고 그것만 되게 치우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간호조무사를 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취업률도 높고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래도 나한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상황을 봐서 안 맞아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사례 다)

점점 더 날짜가 다가오니까 소장님한테 상담하면서, 혼자 살아봤냐고 해서, 한 번도 안 살아봤다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런 걸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달이 갈수록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혼자 나가서 방 얻어 사는 게. 혼자 있는 자체도 그렇지만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요즘에 또 날짜가 되니까 그게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벗어나니까 내가 자립에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뭐를 해야 하나. (사례 라)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다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제력 단절을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서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해야지만 사람이 살아나갈 수가 있잖아요. (사례 나)

- 많은 여성들이 20~30대에는 경제활동을 이어가다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을 중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고,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 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자녀 출산 및 양육 문제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남편이나 다른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태가 된 경우가 많음.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1년 정도의 기간으로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는 쉽지 않지만, 입소자들은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음.

IV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
2.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

가.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2023년 4월 기준, 경기도에는 13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 중이며, 2020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현황, 입소자 특성, 주요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폭력 보호시설의 경우, 입소자 연령대는 ‘13세~18세 이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19세~24세 이하’, ‘25세~64세 이하’ 순이었음. 입소 경로는 대부분 ‘성폭력 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복지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것이었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연계된 경우도 많았는데, 입소자 가운데 다수가 ‘10~20대’였던 점과 무관하지 않음. 지원 내용의 경우, ‘심리·정서 지원’이 40~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의료 지원’, ‘자립지원’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학교문제 지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입소자 가운데 10~20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입소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학교 관련 문제일 수 있음. 또한 장애인 입소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2020년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각각 44.4%, 55.6%였으며, 2021년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각각 44.8%, 55.2%였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입소자 연령대는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40대’와 ‘5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20대’의 비율이 높았으나 ‘60세 이상’의 비율도 낮지 않았음.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자와 비교할 때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자녀 등 가족을 동반하고 입소하는 경우가 많고, 동반한 자녀의 연령대는 ‘6세~12세’의 비중이 가장 높고, ‘3세~6세 미만’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 피해자 지원 내용의 경우,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적 지원’, ‘자립지원’, ‘기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심리·정서적 지원’이 전체 지원 건수 가운데 50%를 넘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자녀를 동반하고 입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교, 비밀전화, 교육비 지원 등 동반 자녀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 지원 건수 가운데 동반 자녀 지원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에는 28.8%, 2021년에는 16.9%였음.

- 경기도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1998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1~2개씩 설치되면서 꾸준히 증가해왔음. 1990년대 후반에 2개, 2001-2005년에 7개, 2011-2015년에 4개로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은 수의 보호시설이 설치되었음. 가정폭력방지법이 1997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6개월 후인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법 제정·시행 이후 몇 년 동안 가정폭력보호시설이 많이 설치되었음.
- 경기도 내 여성폭력 보호시설의 예산 지원 구조를 살펴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를 매칭하여 지원받고 있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음. 국비, 도비, 시군비의 지원 비율은 다소 상이하나 2023년 4월 기준,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의 구조가 전체 17개의 보호시설 가운데 11개(64.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
- 시설의 입소자 정원과 현원은 차이가 있었는데, 2023년 4월 기준, 시설의 정원을 충족시키고 있었던 시설은 없었고, 입소자가 8명인 시설이 4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입소자가 7명인 시설로 3개였음. 월 평균 이용자 수는 7명과 8명인 경우가 각각 3개의 시설로 가장 많았고, 6명과 3명인 경우가 각각 2개의 시설이었음. 월 평균 이용자 수가 1명인 곳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3명 이상은 입소자가 주거하고 있었음.
- 시설 입소자 수가 과거에 비해 감소했다는 문제의식이 이어지고 있으나 시설의 이용자 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시설 이용자들의 연령대도 다양하고, 청소년,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입소하면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측면도 있었음.

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의미와 현실적 한계

1) 여성폭력 피해자의 상처 회복과 자립 기반 마련

- 가정폭력의 경우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특정 상황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성폭력의 경우도 친밀한 관계나 친족 등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비율이 적지 않기 때문에 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시 주거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할 수 있음.

- 폭력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신고하기는 쉽지 않지만, 폭력이 반복되거나 폭력 상황을 벗어나고자 시도할 때, 피해자들은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고, 경찰 신고, 상담소, 긴급보호시설 등에 문을 두드리게 됨. 이 과정에서 보호시설을 안내받고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는데, 보호시설에 입소하기까지 3-4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등 입소 과정과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음. 그러나 폭력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 상황을 벗어나 심신의 안정을 찾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보호시설이 존재나 보호시설의 운영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폭력 상황을 벗어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보호시설 입소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점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될 필요가 있음.

2) 제한적인 시설 환경과 시설 생활에 적응

- 개인적인 공간의 부재, 핸드폰이나 pc 등의 사용 제한, 자녀 동반 가능성 등으로 입소를 결정하는데 고민하기도 하지만, 시설 내에 입소하면 시설 내의 규칙 등을 학습하고 실천하면서 시설 생활에 적응해나가게 됨.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으면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들을 갖게 됨.
- 시설들도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면서 과거에 비해 좀 더 유연하게 생활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핸드폰 사용도 처음 입소 이후 일정 기간만 사용을 제한하고, 이후에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타인 명의 핸드폰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핸드폰 사용여부를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기도 함. 시설들도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면서 과거에 비해 좀 더 유연하게 생활지침 등을 운영해나간다고 할 수 있음.
- 시설생활에서 주요하게 대두되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입소자들의 식사 해결 방법인데, 입소자의 연령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식사 당번 규칙도 조율해가고 있었음. 청소년이나 장애인 입소자가 있는 경우 이들이 식사당번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

이 함께 준비하거나 종사자가 전담하기도 했음.

3) 다양한 입소자들과 지원 범위의 확대

- 보호시설의 경우 일반보호시설과 장애인보호시설을 구분하고 있지만, 장애인 보호시설이 매우 적고,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 구조 자체가 장애 친화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 시설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고, 정신 장애가 있는 경우는 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 지원 관련 경험을 갖고 있지 않거나 다른 입소자들과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음.
- 일부 시설에서는 장애인 입소자가 증가하면서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보나 지원 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준비하면서 장애인 입소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음. 장애인 관련 단체, 교육기관 등에 문의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반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입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음.
- 최근에는 장애뿐 아니라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입소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입소자의 경우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서 종사자들이 입소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입소자들이 증가하면서 종사자 입장에서는 지원의 범위나 내용이 더 다양해지고, 관련 정보들도 습득하고 있어야 하는 부담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4) 보호시설 퇴소 이후의 삶과 주거지원

- 반복되는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이유는 자녀양육과 경제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음.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지만, 보호시설 퇴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입소자들이 일정 기간 이후 퇴소할 때 가장 큰 걱정이 거주지, 생계비에 대한 부분임. 때문에 많은 입소자들이 퇴소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 시설에 머물면서 경제적 독립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었음.

- 많은 시설이 최대 1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단기보호시설인데,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1년 정도의 기간으로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취업능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음. 때문에 좀 더 많은 준비기간을 갖기 위해 장기보호시설이나 기타 다른 지원시설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청소년이나 장애인의 경우 퇴소 시점까지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보호시설에서의 거주 기간 제한이 개인의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2. 정책 제언

가. 가족/장애인보호시설 확대 및 시설 유형 정비

- 가족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등 시설의 유형이 입소 대상이나 장애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일반보호시설로 장애인 보호시설이나 가족보호시설은 수적으로 매우 적은 상황임. 입소자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시설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통합지원시설로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의 구조에서 수적으로 매우 적은 장애인 보호시설이나 가족보호시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도 필요함.
- 현재 경기도의 17개 시설 가운데 장애인 대상 보호시설은 1개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보호시설로 30인 정원 규모를 갖추고 있어서 1개의 시설로는 적지 않은 규모지만, 1개의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은 1개의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의 17개의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매우 넓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음. 이러한 경기도의 지리적 조건과 환경을 고려할 때 장애인 지원시설을 추가 지정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장애인 입소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만큼 장애인 대상 보호시설을 어떻게 확장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피해자나 자녀동반을 희망하는 피해자의 경우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하기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고, 다른 비장애인 입소자들과 생활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도 증가함. 한편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이해와 성장을 돕는 긍정적인 측면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시설 유형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통합적인 시설로 전환이나 시설별로 특성을 발굴해서 특화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나. 최소한의 개인 공간 확보 방안 모색: 1인 1실

- 성폭력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입소자별 공간 관련 지침에 의하면 침실 및 거실의 실제 면적은 입소자 1인당 6.6㎡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경기도 내 보호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시설 내 입소자 현황 등에 따라 1인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상이한데, 개인에게 배분되는 공간의 실질적 크기도 협소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사적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많은 시설이 다인 1실의 구조로서 1개의 방에 2~4명, 상황에 따라서는 5인까지 생활하는 경우도 있음. 입소자 인원이나 시설의 상황에 따라 1인 1실을 배분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경우임. 거실, 욕실, 주방 등은 공유하더라도 침실의 경우 1인 혹은 1가족이 1개의 방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현재보다 보호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입소자들의 만족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개인의 사생활이 중요시되고, 생활방식이 변화되면서 1인 1실에 대한 요구나 문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지원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 개인의 상황이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처음부터 주거지원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보호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호시설을 이용하면서 좀 더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다. 공개형 시설 등 시설 운영 방식의 다양화

-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비공개’ 시설로 운영 중임. 가해자에게 시설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시설 운영의 형태로 인해 입소자들이 생활하는 데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게 됨. 핸드폰이나 pc 사용, 경제활동의 제한 등 시설 입소

이전의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방식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

-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비공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보안 정도를 차별화한 시설 모델을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새로운 스타일의 보호시설을 고려할 수 있게 됨(유화정 외, 2019: 102). 피해자의 상황이 다양하고, 피해자들의 욕구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시설의 보안 등급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라. 입소기간의 탄력적 운영 및 퇴소 이후의 연계지원 강화

-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은 기본적인 숙식문제를 해결해주지만, 보호시설 퇴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퇴소 이후 가장 큰 걱정이 거주지, 생계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입소자들이 보호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며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시설이 최대 1년까지 거주 가능한 단기보호시설인데,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1년 정도의 기간으로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취업능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음.
- 청소년이나 장애인의 경우 퇴소 이후의 삶의 불안정성이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장애인의 경우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입소기간이 만료해도 다른 시설로 연계가 어렵거나 독립적인 주거지원시설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청소년의 경우도 퇴소 이후 어느 정도 자립을 이루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과 소통하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시설 퇴소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연락을 취하면서 정서적 지지나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함.
- 입소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입소자들이 자신의 삶을 기획하는 데에도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입소자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퇴소 시점을 일정한 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또한 퇴소 시점에서 퇴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들을 확인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퇴소 이후에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마. 장애인 입소자 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 일반보호시설에 장애인의 입소가 증가하면서 종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장애인 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 입소 시 종사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더 클 수 있음. 장애인의 경우 음식 준비, 예금 등 금전 관리, 목욕 등 위생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교육부터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시설에서는 장애인 입소자가 증가하면서 장애인 지원에 대한 정보나 관련 기관 등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개별적인 기관 차원이 아니라 종사자 보수교육이나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모든 종사자들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종사자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에 장애인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적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교육이나 자료를 제공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지원시설도 확대되어야하지만, 일반보호시설 종사자의 경우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입소자들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바. 보호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

- 보호시설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여전히 보호시설의 존재나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 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으로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신고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보호시설과 같이 숙식을 제공받으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보호시설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보호시설 내 생활 통제의 정도가 매우 높고 엄격하여 개인의 자유가 거의 제한된다는 등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보호시설에서의 시간과 생활은 피해로 인한 고통과 상처를 회복하고,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특히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나왔으나 거

주할 공간이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지는 많지 않을 수 있음. 위기 상황,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시설은 기본적인 숙식을 해결해주는 보호막이 될 수 있음.

- 최근에는 주거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개인이 경제적 상황, 가족상황, 연령 등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주거지원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이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타인의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때문에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보호시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사.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 반려동물, 반려가족으로 불릴 만큼 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보호시설 입소 시에도 반려동물 동반 입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왔음. 특히 반려동물을 계기로 자신이 경험한 폭력을 인지하거나 반려동물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 회복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반려동물 동반 가능성을 문의하거나 반려동물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으로 시설 입소를 망설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개인의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입소자들의 생활을 위한 공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입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 특히 개인적으로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고, 추가적인 소음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불충분한 공간에 또 하나의 생명체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입소는 어려운 상황임.
- 경기도에서는 2020년부터 보호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시설을 설립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의 보호시설 환경에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참고문헌

-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 문미경, 이미정, 황정임, 김동식, 이인선, 정운경. (2016). **2016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여성가족부.
- 문미경, 이미정, 김은경, 김동식, 김효경. (2019). **2019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여성가족부
- 박선영, 박복순, 김정혜, 송치선, 심선희, 이운진. (2018).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박선영, 황정임, 송치선, 김현아, 김정혜. (2016).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변화순, 이미정, 박복순. (2009). **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의 효과적 통합 연계 방안 연구**. 여성부.
- 서해정, 이사라. (2011)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송이은, 황선영. (2020).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질 향상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여성가족부. (2022). **2022년 상반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 여성가족부. (2023). **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유영재, 김나리, 최은하. (2015). **위기청소년 보호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소재 청소년 일시쉼터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지. 61. p.99-135.
- 유화정, 송란희, 홍예슬. (2019). **서울시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 개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미정, 문미경, 장미혜, 전혜상, 권민정. (2019). **2019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여성가족부.
- 이선형, 기나훤. (2021).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미혜, 김효정, 정연주, 박상민, 정다운, 정지연, 유경희, 이다운. (2021).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정혜원, 박철현, 심선희, 최금순. (2022).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홍선영, 조한나. (2016). **여성폭력 관련시설 여건분석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 록

1. 기관서면조사지

1. 기관서면조사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심선희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경기도의 제안으로 피해자 보호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보호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비밀 보장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빠짐없이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구에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 심선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031-220-3912)

황나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원: 031-220-3983)

【기관현황조사_서면조사】

1.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운영주체	<input type="checkbox"/> ①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② 비영리법인 <input type="checkbox"/> ③ 비영리 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④ 대학 및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설립 시기	년 월
예산 지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 <input type="checkbox"/> 도비 ()% <input type="checkbox"/> 시군비 ()% - 국비/도비/시군비 지원을 받기 시작한 시기: 년 예산 지원이 변화되었다면 그 시기 및 이유도 적어주십시오.
시설 입소 정원/현 입소 인원	명/ 명
월 평균 이용자 수	명
시설 면적	m ²
구비 시설	<input type="checkbox"/> 침실/방 ()개 <input type="checkbox"/> 거실 ()개 <input type="checkbox"/> 사무실/상담실/숙직실(<input type="checkbox"/> 분리 or <input type="checkbox"/> 겸용) <input type="checkbox"/> 식당 및 조리실 (<input type="checkbox"/> 분리 or <input type="checkbox"/> 겸용) <input type="checkbox"/> 목욕실/세탁장/화장실(<input type="checkbox"/> 분리 or <input type="checkbox"/> 겸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1-1. 1인 생활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1개의 침실/방에 몇 명이 생활하고 있는지요?

- ② 1인실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비율인지 등에 대해 적어주십시오.

- ③ 1인실의 필요성, 1인실 운영 시 장단점 등에 대해 의견 주십시오.

1-2. 반려견 동반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었는지, 반려견 동반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의견주십시오)

1-3. 코로나 19 시기에 시설 운영에 변화가 있었는지요? (일부 시설에서는 감염자의 격리 등으로 침실/방의 배분 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변화가 있었던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2. 시설의 인력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설의 모든 종사자에 대해 적어주시고, 직위는 시설장, 사무국장, 상담원 등을 적어주십시오. 2023년 4월 기준)

	직위	현 기관 경력(2023.4.기준)	유사기관 경력
종사자 1	예)시설장	년 개월	년 개월
종사자 2	예)사무국장		
종사자 3			
종사자 4			
종사자 5			
종사자 6			
종사자 7			

- 유사기관은 사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기타 민간단체 등입니다.

3. 시설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설 환경	정도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
① 지리적 접근성 낮음(ex.대중교통 이용 편의 등)					
② 시설 노후 정도 높음 (ex.전기, 배관 등)					
③ 안전 및 재난 대비 정도 낮음 (ex. 소방시설 등 미비)					
④ 시설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ex. 교육 및 상담 등)					

3.1.이용자들의 식사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① 이용자들의 식사와 관련해서 시설에서 제시하는 규칙이 있는지요?
- ② 이용자들의 식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직접 조리,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조리, 배달 음식 이용 등 이용자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주십시오)
- ③ 식사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지요? (식사 해결 방법에 대한 개선점이나 제안점 등에 대해 적어주십시오)
- ④ 기타 의견

3.2.현재 시설 구조나 환경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 ①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 ② 과거에 비해 개선된 점
- ③ 시설 구조나 환경에서 가장 개선되기 어려운 점
- ④ 출입자유 시설(개방형 시설, 네덜란드의 오렌지 하우스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⑤ 기타 의견

5. 시설 운영 및 이용 규칙/지침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무(O, X)	비고
시설 운영 규칙/지침		
입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생활 지침 등		

5.1. 시설 운영 규칙/지침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적어주십시오.

시설 종사자 업무 배치, 인력 관리, 입소자 관리, 등

5.2. 입소자 대상 생활 지침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적어주십시오.

생활수칙, 핸드폰 사용 제한 등

6. 여성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입소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현재 보호시설의 입소자 가운데 장애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① 장애인 입소 시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지요?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등)

② 장애인 입소 시 어려운 점 등

8.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기능과 역할, 개선점 등에 대해 적어주십시오.

- ① 현재의 보호시설의 한계점
- ② 폭력의 유형별 시설 분리 운영, 입소자의 연령대 고려 등
- ③ 장애인과 비장애인 시설의 분리 등
- ④ 기타 의견